

2022년도

지문이 있는 교실
Engaging Classrooms
즐거움
행복한 학교
Joyful Schools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광주광역시교육청



목 차



I.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	5
II. 2022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9
III.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17
1. 세입예산 편성 기준	19
2. 세출예산 편성 기준	22
3.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29
4. 세출예산 운용 기준	37
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	45
6.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 주요 변경사항	46
IV.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49
1.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51
2.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한 기준 경비	52
3. 예산편성지침 기준 경비	58
V.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73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75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78
3.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세세부사업 설정	160
VI.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187
VII. 예산 편성 참고 자료	21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개요

1. 예산의 개념
2. 예산편성 근거
3. 예산의 주요 내용
4. 예산편성 절차



I.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 ◆◆◆

1 예산의 개념

-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금전적 수치로 나타내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1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
 - 교육비특별회계*의 1회계연도 동안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회계

2 예산편성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30조(추가경정예산)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3 예산의 주요 내용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등을 규정
- (세입·세출예산) 1회계연도 동안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과 금액
- (계속비)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
-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에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의 내역과 금액
- (명시이월비)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

4 예산편성 절차

- | | | |
|---|---------------|---|
| ①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기준 시달 통보(8월~9월) ■ 「지방재정법」 제38조 |
| ② | 시·도교육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편성(9월~10월) ■ 「지방재정법」 제36조 |
| ③ | 시·도교육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11. 11.까지) ■ 「지방자치법」 제127조 |
| ④ | 지방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심의·의결(12. 16.까지) ■ 예산 확정 이송(의결 후 3일 이내, 12. 19.까지)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7조, 제133조 |
| ⑤ | 시·도교육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예산확정 보고 및 고시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이후 지체없이) ■ 「지방자치법」 제133조 |



2022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1. 지방교육재정 여건
2. 광주교육재정 여건
3.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4. 광주교육재정 운용 기본 방향



II. 2022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

1 지방교육재정 운용여건

□ 세입 여건

‘코로나19 충격’ 대비 방역조치,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세수 회복이 기대되나, ‘코로나19 4차 유행’ 및 ‘백신 상용화 상황’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이전수입) 경제 여건 개선으로 내국세 및 지방교육세가 증가될 전망이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하반기 경기 변동 가능성도 고려 필요
- (자체수입)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 및 저금리 기조 등으로 자체수입 대폭 감소 전망
- (지방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강화된 지방채 발행 요건* 등을 감안하면 지방채는 미발행 예상
 - * 교부금 부담 지방채는 학교 신설 사업에 한정하여 발행, 그 외 사업별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방채를 발행·승인[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개정('20.12.1)]
-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감소 예상

□ 세출 여건

처우개선, 물가상승 등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지출은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교육 투자 등 교육 지출도 증가 전망

- (인건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물건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등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와 복리후생비 소요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이전지출) 원아 수 감소에 따라 자치단체 보육료 보조의 감소 요인은 있으나, 기타 이전지출 수요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자본지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내진보강·석면제거 등 학교환경 개선 지속 추진으로 증가 전망
- (상환지출)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라 감소 전망
- (전출금 등) 등교확대에 따른 방역인력 및 물품비 지원, 학교 자치 역량 강화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예비비 및 기타) 재난 대비 예비비 편성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내부거래) 재정 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확대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등 기금전출 증가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 예상

2 광주교육재정 여건

□ 세입 여건

- (이전수입) 내국세 및 지방교육세 증가로 이전수입 증가 전망
- (자체수입)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재정규모 축소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 대규모 감소 전망
- (지방채) 정부 세수 증가로 지방채는 전년과 동일하게 발행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순세계잉여금) 적극적인 지출 조정에 따라 소폭 감소 전망

□ 세출 여건

- (인건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으로 증가 전망
- (기본운영비) 공공요금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교육사업비)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회복,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 환경조성,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재원 투자로 교육사업비 증가 전망
- (시설사업비) 학교 신증설 사업비, 그린스마트 스쿨 및 학교단위 공간혁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을 위한 시설 투자 수요로 시설사업비 소폭 증가 전망
- (예비비 등) 재해·재난대비 예비비 편성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교육상 |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 교육지표 |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

Engaging Classrooms, Joyful Schools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 5대 주요 시책 |

- 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 ②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 강화
- ③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
- ④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 ⑤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 3대 역점 과제 |



□ 「2022 광주교육」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

- (교육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학습·정서·사회성) 회복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
- (미래 교육 추진) 미래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및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
- (교육안전망 구축) 학교 방역 및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 투자
- (학령 인구 변화 대응) 적정규모 학교 육성, 조직 인력관리 적정성 제고, 수업혁신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정책에 재정 투자

□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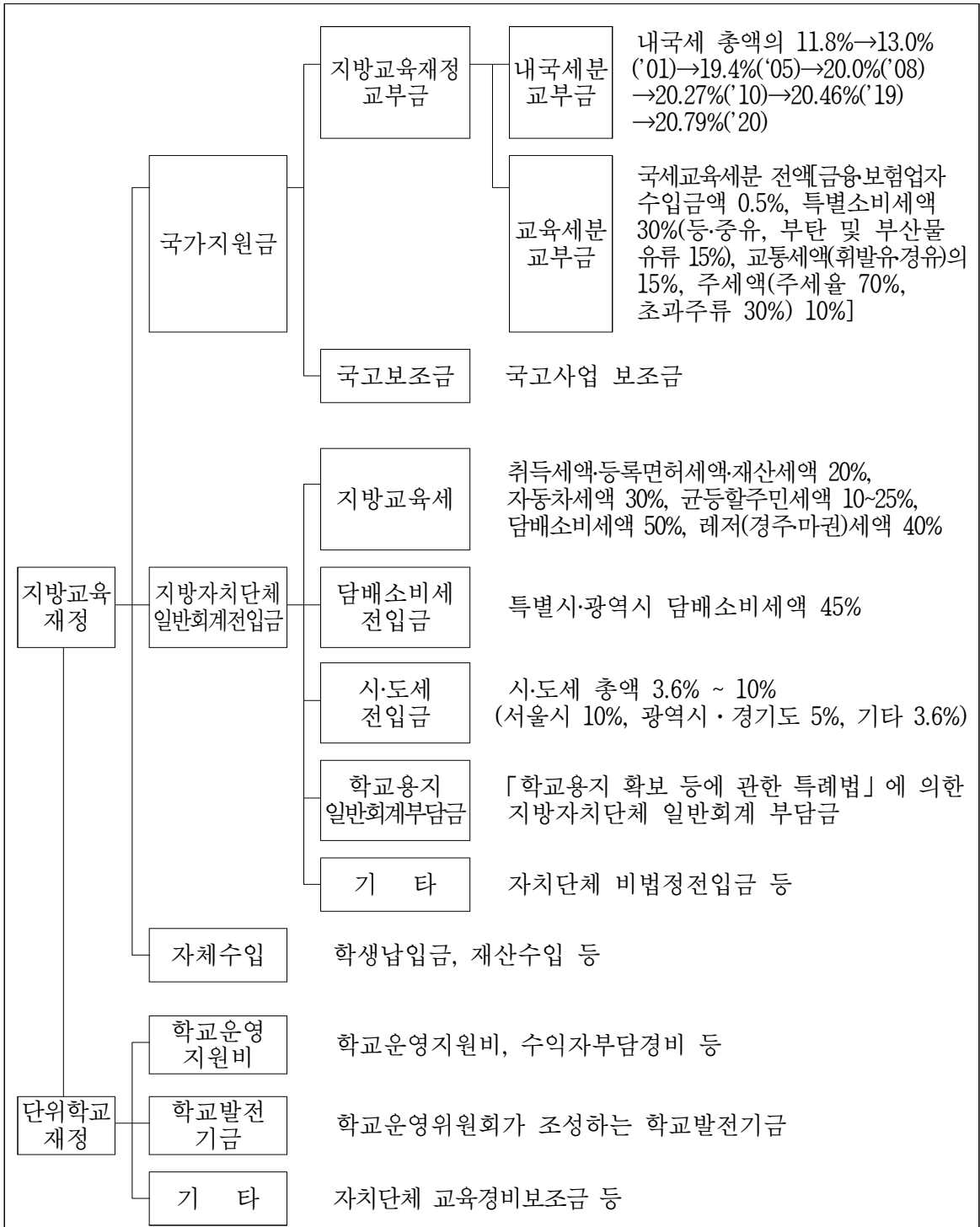
-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기본운영비 확대
-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사업 발굴 및 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입 확대 유도

□ 재정 운용의 자율성 및 계획성 제고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이월·불용액 최소화
-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억제하고, 유사 사업 조정을 통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로 활용도 제고
- 적극적 본예산 편성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

□ 교육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하여 재정 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1. 세입예산 편성 기준
2. 세출예산 편성 기준
3.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4. 세출예산 운용 기준
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
6.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 주요 변경사항



Ⅲ.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1 세입예산 편성 기준

- ❖ 2022년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항목별로 빠짐없이 반영
- ❖ 각종 자료에 의하여 세입 재원을 정확히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지방재정법 제36조)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재원
 - 보통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79\% \times 97\%$ + 교육세 일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특별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20.79\% \times 3\%$
 - 증액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금액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 특별회계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
- 편성: 국가에서 교육청에 내시 또는 교부한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재원
 -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
 -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 시·도세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
- ※ (서울) 100분의 10, (광역시, 경기도) 100분의 5, (세종, 도지역) 1,000분의 36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2분의 1 금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 ‘라’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교육급여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급여보조금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의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 비법정이전수입: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기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 편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금액으로 편성

다 기타이전수입

- 재원: 민간이전수입과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 편성: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기부 또는 지원하는 금액
 - 민간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이전이 확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

라 자체수입

- 재원: 공유재산·물품 사용·임대료 및 매각대금, 이자 수입 등
- 편성
 - 사용·임대료: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 연간 사용수익허가(임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빠짐없이 반영
 - 자산매각수입: 연간 공유재산·물품 처분계획에 따라 대상 자산에 대한 매각금액을 합리적인 추계기법을 사용하여 추정 반영
 - 이자수입 등: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 특이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

마 지방채

- 편성: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만큼만 편성·발행

바 순세계잉여금

- 편성: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재정집행 중간점검 결과 등을 분석하여 반영

사 내부거래

- 편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반영

2 세출예산 편성 기준

- ❖ 「2022 광주교육」계획과 연계한 정책 중심의 계획성 있는 자원 반영
- ❖ 관행주의·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성과중심의 합리적 자원 반영
- ❖ 일회성·행사성·낭비성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 편성
- ❖ 법령과 조례, 지침 등에 근거한 적법한 예산 편성
 - 근거 없는 수당, 사업비 등 임의 편성 금지
 - 사전 절차 이행사항 준수
 - 교육부 훈령에 명시된 예산과목 설정 준수
- ❖ 집행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및 관리로 이월·불용액 최소화

가 경상사업비

- (인건비) 호봉승급,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편성
-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별표 1] 업무추진비 기준경비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편성
 - 사업추진업무추진비성 협의회비의 일반운영비(210) 편성 금지
- (특정업무경비) 교육감이 자율 결정하되, 과반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 (학교기본운영비) 제반여건, 수년간 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편성
 - 공공요금, 보험료 등 경직성경비는 필수 반영
 - 학교 전기요금 등은 우선 반영하여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
-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기관(부서)별 자원 배분 범위 내 예산편성
- (채무상환) 2022년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 및 BTL 원리금 편성

나 교육사업비

- (신규사업)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원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출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사업의 감축 방안 마련

- **(계속사업)** 원점(zero-base)에서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추진
 -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규모, 지속 여부, 투자시기 등 재검토

다 학교회계전출금

- 학교로 교부될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
- 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재정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예산 편성
- 학교 공통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의 토대 마련을 위해 최대한 총액 교부(목적지정 경비 편성 최소화 강구)
 - ※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 및 소액경비는 가능한 학교운영비로 편성

라 시설사업비

- **(계속비 편성)**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은 계속비 제도 적극 활용
 -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 당해연도에는 집행 가능 금액만 편성
 - 계속비가 아닌 일반예산에 과다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관행 금지
-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 당해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예산 편성
 -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여 이월액 최소화
 - 낙찰차액은 추경예산에 필요사업으로 반영하여 재정 효율성 제고
- **(설계공모예산)** 자체투자심사가 완료된 학교건축 관련 설계공모예산은 적정 사업기간 확보 등 필요시 중앙투자심사 전에 편성 가능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설계공모 비용으로 심사수당, 운영비, 공모비용 보상금 등 편성

마 정보화사업비

○ (대상)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
-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 (일반 원칙)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의 적기 추진

-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가급적 상반기 중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정보화예산은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 불가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나, 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에 사용 가능

○ (편성) 연차별·항목별 상세투자 총소요액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예산 편성

※ 총소요액: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완료 후 3년간 운영유지관리비 및 추가구축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

○ (검토 사항)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개선 시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
- 운영·유지관리 비용은 기존 운영·유지관리비용 절감액 내에서 충당하도록 노력
- 사업간 중복을 검토한 후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은 관련 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바 지방보조금사업비

-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개념) 교육감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 (분류)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공공단체보조: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보조: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보조: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지방보조금의 종류)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

구 분	내 용	세출목
민간보조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자본보조(320-14)
공공단체보조	교육감이 정책상, 재정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2)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법인·사학경영자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지원하는 시설사업 지원금	사립학교시설지원(620-1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가능

- (보조금 업무 흐름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

※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 가능

○ (보조금 지원 원칙)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교육청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 지방보조금 예산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 도래사업, 시도교육청 고유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가능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는 5년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 제한

※ 지방보조금 관리는 「지방보조금법」, 우리 교육청의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르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교부 및 정산 등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사 민간위탁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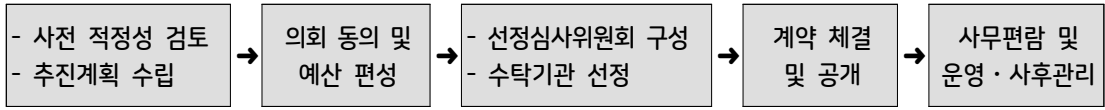
○ (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제4항
-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민간위탁의 기준) 교육감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절차) 신규위탁 또는 의회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된 민간위탁사무



○ (성과평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계약시 활용

[유사개념]

구분	민간위탁사업비	시도분담금
위탁기관	민간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편성목	민간위탁금(320-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30-05)

아 의무지출

○ (근거)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범위)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

- 국고보조사업
-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재량지출: 법령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서 의무지출 외의 지출

○ (편성) 의무지출은 지출과 지출규모가 의무화된 경비이므로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예산에 소요 전액을 편성

자 예비비

○ (근거)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

○ (편성)

-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계상 가능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불가
-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방지

차 성과계획서 작성

○ (근거)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화

○ (작성 대상)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 사업은 제외 가능

-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 경상사업비

○ (작성 방법) 재정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지표 등을 설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참조

카 성인지 예산서 작성

○ (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44조의2제1항

- 2012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칠 영향의 분석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화

○ (작성 대상)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업, 교육청 자체선정사업 등의 세부사업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

○ (작성방법) 성평등 목표, 성인지 예산의 규모, 성별 수혜분석 및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설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5] 서식 1-14. 성인지 예산서 작성서식 참조

3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가. 법령 사항 반영 및 의회 등의 시정 요구사항 개선 추진

-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반영해야 할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또는 감사기관 등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추진

나.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설정 준수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384호, 2021. 8. 9.)」 준수
- 교특회계 예산편성 과목 위배시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분석'에서 감점지표로 적용

1) 세입예산 과목 구분 유의사항

- '균특회계 시도 전환사업 보전금'은 '시도세전입금'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국고지원전입금(12203)'에 편성하고 광역자치단체전입금(12201)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 시·도교육청 간 이전수입은 '자치단체간이전수입(16200)'에 편성하고, '민간이전수입(16100)'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 기부금 관리 철저(신규)
 - (현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는 자발적 기탁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으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나 제5조제2항에 해당하면 접수 가능
 - (편성방안) 시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법률에 예외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기부금 접수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집행

2)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유의사항

- 유아교육(단위사업) 내 사립유치원지원(세부사업) 구분(신규)
 - (편성방안)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의 경우 사립유치원지원(세부사업)으로 편성 운용하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다른 사업 편성 가능

○ 돌봄교실운영(세부사업) 신설에 따른 구분(신규)

- (현황) '21년 교특회계 사업별 분류상 방과후학교운영(세부사업) 내에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되어 예산 편성·운용
- (편성방안) '22년 사업별 분류가 개선됨에 따라 돌봄교실운영(세부사업)이 신설되어 별도로 예산 편성·운용 필요

○ 학교시설여건개선(정책사업) 및 시설사업관리(단위사업) 구분(신규)

- (현황) 학교시설여건개선에는 자산취득비, 부지매입비, 시설비를 편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는 시설사업관리 사업에 편성
- (편성방안) 설계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모니터단 포함) 수당 등 경비, 관련 협의회(워크숍) 경비, 연수 및 평가 경비 등은 시설사업관리(단위사업)에 편성

○ 교육복지(정책사업) 내 학생복지비 편성(신규)

- (현황) '22년부터 교육복지지원(정책) 사업 내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개선*하여 교육복지(정책사업)로 정비
 - * 8개 단위사업/15개 세부사업 → 4개 단위사업/14개 세부사업
- (편성방안) 전국·공통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비의 경우는 학교급식운영(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그 외 특정 대상 또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복지비는 교육복지(정책사업)에 편성
 - ※ 예) 수련활동수학여행 지원비, 방과후자유수강권과 같이 특정 대상을 정하거나 1인당 단가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복지비는 교육복지 편성

○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일괄 편성을 위한 단일 세부사업 관리(기존)

- (현황)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21회계연도부터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운용 중
- (편성방안)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로 일괄 편성
 - ※ 단,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업성 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단위사업) 예산 관련 세목 준수(기존)

- (현황)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관련 세목*으로 한정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사학기관관리, 유아교육지원 등 타 사업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세목으로 별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거나 다른 세목을 해당 사업에 편성

* 경상교육지원사업비(28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470-01), 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06),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13)

- (편성방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세목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만 편성(타 사업 편성 금지)

○ 기본운영비(단위사업) 목적을 고려한 편성 필요(기존)

- (현황) 기관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운영경비이나, 격려·유관기관 협의·현안사업 추진 등의 기관 및 부서운영 성격 업무추진비를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

- (편성방안) 사업추진 시 편성하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따라 사업담당 부서의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관운영(정책)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23002)를 편성하거나, 기관운영(정책) 외 사업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23001) 또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5002) 편성 오류 발생

○ 총액 편성 지양(기존)

- (현황)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위한 예비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외 목적미지정 총액경비는 편성 불가하나, 일부 교육청에서 현안 또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을 총액으로 편성

- (편성방안) 법령의 근거 없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이 없는 포괄적 총액(재량)사업비 편성 금지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유의사항

가) 학교회계전출금

○ 공·사립학교(유치원 포함)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학교회계전출금(620목)에 편성

○ 국립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610-01)에 편성

○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등 기타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는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620-16)’에 편성

- 교과교실강사, 원어민교사, 상담강사 등 사립학교 기타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를 ‘인건비재정결합보조(620-08)’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나) 급량비

- **(기준)**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 **(현황)**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하나, 워크숍·연찬회·회의·연수 등의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급량비로 집행
- **(편성방안)** 아래의 경우에만 급량비로 편성 인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식비는 8,000원 단가를, 숙박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편성(간식 미인정)
 - ① 선박(원양어선 승선실습 등)에서의 단체급식
 - ② 시험업무(임용·승진 시험, 수능, 검정고시 등) 추진에 따른 단체급식
 - ③ 교육훈련기관의 단체급식
 - ④ ①~③의 경우에 따른 숙박비*

* 이를 제외한 연수·워크숍·연찬회 등 숙박이 불가피한 행사의 숙박비 경우, 행사 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210-07) 내 시설임차료’로 편성·집행

※ [참고] '21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시 급량비 편성 오류 사례 및 검토의견

1) 인사업무를 위한 집중 작업(회의) 경비를 급량비로 편성

☞ 작업(회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특근매식비 및 업무추진비로 편성

2) 을지태극연습 등의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를 급량비로 편성

☞ 교특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각종 훈련 참여 직원에 대한 매식비는 특근매식비 편성

다)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성 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성 업무추진비로 구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250-02): ‘(단위사업)기본운영비’에만 편성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30-01): ‘(단위사업)기본운영비’에만 편성
- 사업추진업무추진비(230-02): ‘(단위사업)기본운영비’ 이외의 사업에 편성

※ 운영비(210목) 내 홍보용, 방문자(내빈 포함)용 또는 선물용품은 사업추진업무추진비(230-02)로 편성하여야 하므로 업무추진비 총량제에 따라 편성 지양

※ 운영비로 사용가능한 홍보용 물품은 팸플릿, 홍보용 간판, 알림판을 의미하고, 행사 운용수용비는 행사 진행상 필요한 물품(체험용품, 문구용품 등) 구입에 한함

라) 위탁사업비

○ 교육청에서 기관운영 관리를 위해 외부에 위탁하는 사업비

예산과목	과 목 설 정
기타제세 (210-02)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 및 부담금 등 -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 성격의 부담금
시설장비유지비 (210-09)	특정한 시설 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 및 1년 미만의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관리용역비 (210-13-47)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비용

○ 교육청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외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비

예산과목	과 목 설 정
일반용역비 (210-13-48)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업무나 부수적인 일부 사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경비
민간위탁금 (320-02)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비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330-05, 06)	(330-05) 경상적 위탁사업비 (330-06) 자본적 위탁사업비 - 공공기관에 위탁수행하는 시도분담금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학술정보원 등 - 성격에 따라 경상·자본을 구분하여 편성

마) 출자·출연기관

○ 출자·출연기관 관리 철저(신규)

- (현황) 「지방출자출연법」 개정(20.6.3.시행)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고시 및 관리* 추진
- (편성방안)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출연기관은 교육부를 통해 고시하고 출연금을 지원하며, 위탁사업비를 통한 운영비 지원 불가

* 최근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설립 시 출연금 지원하였을 경우 교육부 고시 필요

바) 기타사항

- (강사수당) 공무원 및 민간인 신분의 외래강사 수당, 강사실비 경비는 운영수당(210-06)에 통합 편성·집행
 - (국외여비) 교육훈련 목적의 국외훈련이 아닌 국외 현장체험, 문화교류 등의 여비는 '국외여비(220-02)'로 편성(국외훈련여비(220-04)로 편성 불가)
 - (교원연구비)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과 관계없는 수당은 교원연구비 세목(240-04) 사용 금지
 - (인건비) 반드시 직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
 - 공무원인건비: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 근로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원인건비
 - ※ 공무직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인건비'로 일괄 편성
 - ※ 단,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업성 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 (급식비)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급식비는 '급식지원' 단위사업에 편성
 - ※ 급식 지원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제반 경비는 '급식관리' 단위사업에 편성
 - (학교운영비성 사업) 목적 지정 경비 편성 지양
 - (세부사업)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620-02)'만 편성
 - (세부사업)운영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620-09)'만 편성
- ※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분석'에 학교회계 기본적교육활동비·목적사업비 비율 및 학교회계 이월·불용률 지표 반영
- (반환금) '반환금 및 기타(710-02)'는 반드시 '(세부사업) 제지출금등'에 편성

다. '세세부사업명' 설정 기준 준수

- 세세부사업 설정 기준을 숙지하여 해당 사업에 맞는 기준 설정
- 세세부사업의 신규·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 후 재설정
 - ※ 세세부사업이 잘못 설정될 경우 예산서 편제의 통일성 저해

라. 세입·세출예산 단위와 수량 등 산출기초 계상 철저

- (편성 단위)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에는 '원' 단위 계상
 - ※ 에듀파인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는 서식 임의 수정 금지
- (계량 단위) 모든 계량 단위는 「미터법」 적용
- (금액 단위) 1,000원 미만 세입은 절사, 세출은 절상함
- (산출 기초) 산출기초 순서, 기준단가에 따라 정확하게 계상
 - 교원퇴직수당 부담금은 반드시 정년·일반퇴직자와 명예퇴직자 2개로 구분하여 예산서에 산출기초와 금액을 표기

마. 세출예산 학교급·기관급 구분 철저

- 세출예산 편성 시 반드시 학교급·기관급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며 학교급·기관급을 구분하지 않거나 잘못 지정하면 지방교육재정 분석 등에 문제 발생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 등으로 구분
- 세출예산의 학교(기관)급 구분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 수혜를 받는 학교(기관)를 기준으로 구분
 - (예시) 본청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 예산을 편성·지출할 경우 학교급 구분은 '초등학교'로 지정

바.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최소화

-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
- 각종 행사 후 내부직원 간 관례적인 간담회비 편성 지양
 - 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관리(예산 규모의 0.12%) 대상
 - 업무추진비 한도를 줄이기 위해 예산과목 위반 시 교육부 주관 '재정분석'에서 감점 처리
 - '21년부터 교육부훈령 [별표 4]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변경에 따라 워크숍연수 등에 따른 행사성 경비와 기관방문 기념품 등이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의무편성
 - 불요불급한 행사, 기념품제작 등을 제한하며, 과목을 위반하는 행위 일체 금지

사.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

-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반영 및 투자심사 미통과 사업은 예산편성 불가

아. BTL 신설학교 정부지급금 관리

- BTL 사업의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의 청구내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무 모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산정하고, 임대료 지급 내역 등 누적관리 철저
- 기본운영비를 학교회계로 배정 시 BTL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운영비 항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배정업무 철저

자.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이월 관리(신설)

- (편성방안) 장기계속사업 또는 명시이월이 아닌 계속비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이·불용률 감축 필요
 - ※ (참고) 지방교육재정과-5546(2020.8.24.) '지방교육재정 계속비제도 적용 관련 질의 회신 결과 알림'
- (감사원 지적사항) 아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일선 학교에서 집행할 수 없거나 업무경감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은 학교회계 전출금이 아닌 해당 사업 예산에 편성·집행(기존)

〈감사보고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20. 5월) 中〉

앞으로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는 학교시설비 사업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전출한 학교로부터 세입·세출외 계좌로 학교시설비를 되돌려받아 지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편성·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4 세출예산 운용 기준

가 예산 배정

- (근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 (개 념) 일정기간(월별·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으로써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배정단위) 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은 예산부서, 목은 사업부서에서 관리

나 예산 변경

- (원 칙)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함.

예산집행 원칙

지방재정법 제47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집행 잔액의 타 용도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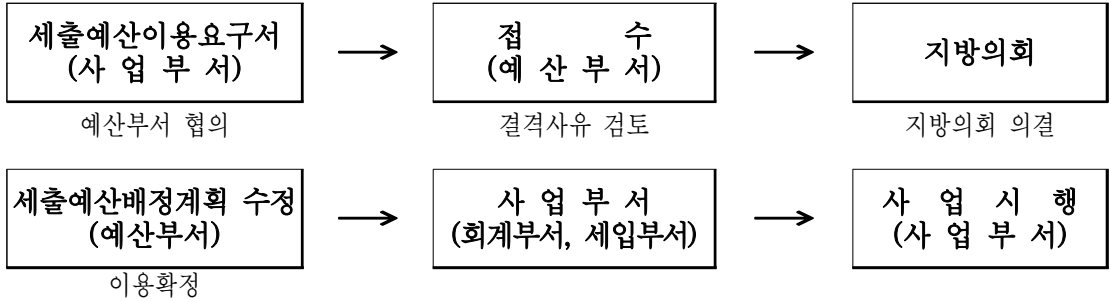
- (문제점) 이 원칙에 의하여 모든 세출예산이 집행될 경우,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재해대책 등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지출수요의 발생 시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발생
- (예 외)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예산지출의 탄력성 확보

1) 예산의 이용

- (개 념)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방 법)**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며,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절 차)**



이용절차 설명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단위: 정책사업 간 - 이용방법: 사업부서가 정책사업 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2) 예산의 전용

- **(개 념)**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범 위)** 기관별로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목, 동일 세부사업 내 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 **(방 법)**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의회 제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

○ (절 차)



전용 제한

지방재정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용제한 목

-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총액인건비 포함) ▶ 시설비 및 부대비(420)
▶ 상환금(510) ※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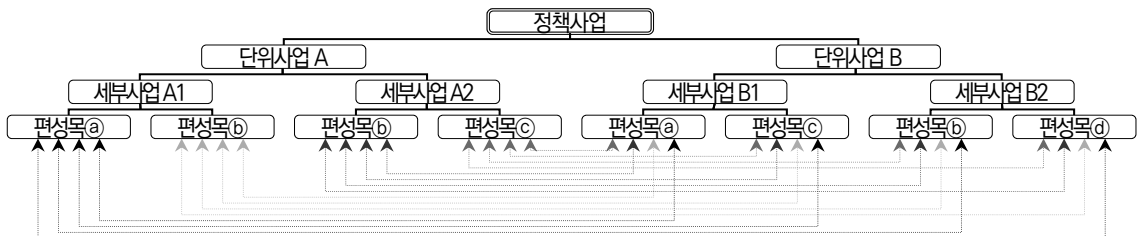
- 다른 비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

업무추진비(230)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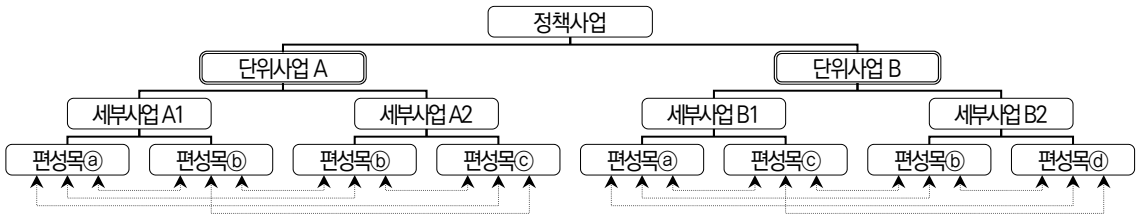
○ 운용기준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할 수 없음
- 이월된 예산의 전용과 세부사업 신설을 통한 전용은 불가
- 시설비 및 부대비(420)의 경우 동일 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 내 원가통계목간 상호 변경 사용은 가능

○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목간 전용(편성목=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목간 전용(편성목=목)



3) 예산의 변경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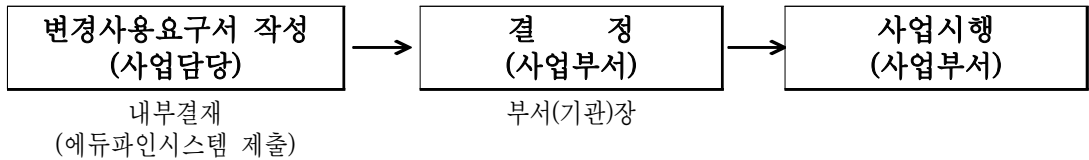
○ (개 념) 동일 세부사업 동일 목내 세목 간 예산을 부서(기관)장 책임하에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동일 세부사업 내 목을 달리하여 변경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변경사용 제한	[교육부] 2022년도 예산편성 기준
○ 변경 후 재변경 사용 불가, 전용 제한 목은 변경사용 또한 제한	

○ (절 차)

- 사업담당자는 변경요구서를 작성, 부서(기관)장이 결정하여 변경사용
- 에듀파인시스템의 변경사용요구서를 작성·확정 후 집행
- ⇒ 변경사용 절차 없이 품의 시 원가통계목 변경 처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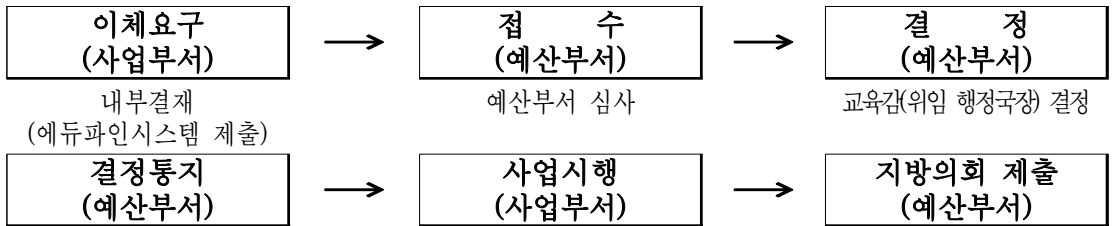
4) 예산의 이체

○ (개 념)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 (원 칙)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체 제외) 기관(부서) 명칭만 변경, 본청 동일 부서 내 담당(팀) 간, 지원청·직속기관 내 부서 간 통합, 폐지, 신설 및 업무 이관은 이체 대상 아님
- (유의 사항)
 - 이체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므로 추경 시 감액 불가(감액 시 재이체 처리)
 - 이체는 예산을 직무 권한의 변동에 따라 소관만 옮겨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예산과목을 임의로 신설 또는 삭제할 수 없음
- (의회 제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 ('20. 9. 10. 시행,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
- (절 차)



【세출예산 구조별 예산변경 구분】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명	원가통계목			산출기초	예산액
							목	세목	통계목		
예산 구조					교육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활성화지원							
			평생교육시설 및운영지원		1,000사업 가.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210	01	01	0000원×0회=	000	
구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처리			예산부서		예산부서			사업부서			

[참고]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구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성격	과목간 과부족의 융통 (예산의 목적외 집행)		세목간 과부족의 융통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조례·제정·개폐시
범위	정책사업 간	목 간	세목간	과목에 관계없이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은 범위
요구권자	교육감	부서(기관)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교육감 (위임 행정국장)	부서(기관)의 장	교육감 (위임 행정국장)
	사전승인	분기별 제출		분기별 제출
근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지방재정법 제49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다 예산의 이월

- (개 념)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관 리)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1) 명시이월

- (근 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개 념)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 (요 건)
 - 원인행위(계약) 유무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
 - 원인행위 당시 완료 기간이 당해 연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어야 함

2) 사고이월

○ (근 거)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요 건)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계속비이월

○ (근 거)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 (개 념)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 의회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

○ (요 건)

-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완성연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월이 가능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한 연장 가능

【 예산의 이월 구분 】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의결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결
요구시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확정시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이월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이월 가능
사업진행 기간	2년, 사고이월시 3년	2년	5년, 사고이월시 6년
관리방법	예산현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전용가능 여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라 이·불용액 최소화

- (관리목표 설정) 매 회계연도마다 이·불용액 목표 자체 설정하여 관리
- (관행 개선)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을 확대하여 이·불용액 감축 추진
 - 명시이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감축
 - 사고이월: 긴급입찰 및 선금제도를 활용하여 사고이월 최소화
- (집행 중간점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실적 및 향후 지출계획 등을 점검하여 이·불용 예상액을 추경 시 감액 조정하고 지출수요가 높은 사업에 재편성하여 재정운용 효율화
- (집행 관리) 수시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재정집행점검단 운영 등으로 집행상황 점검·지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집행관리 추진

【세입예산 과목 개편】

- 기금 등 교육환경 변화 수요에 따른 과목 신설, 성질별 과목 및 용어 등 정비
 - 회계연도 종료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사용잔액 반납금 별도 과목 신설, 과목체계 부적합한 ‘금융자산회수’ 과목이동, 기금 등 재원 활용 위한 ‘예탁금및예수금’ 과목 신설

【세출예산 과목 개편】

○ 사업별 과목 개편

- ‘인건비’ 관리 위한 별도분야 신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 내 편성한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기타’ 분야 신설
- 재무활동 성격의 ‘정책·단위사업’ 신설 통한 통계 오류 등을 해소
- 유사성격 사업 통폐합, 상·하위 간 항목 정합성 개선, 사업 간소화, 명칭정비 등 **사업별 예산 재구조화***

* (총 249개 → 189개, ↓60개 24.1% 감축) 분야(2→3), 부문(4→5), 정책사업(12, 증감 각1), 단위사업(81→49), 세부사업(148→120)

○ 성질별 과목 개편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및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과목 신설
- 세분화된 학교회계전출금 과목 정비 등 성질별 과목 정비·보완

6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 주요 변경사항

○ 세세부사업 과목 개편

- 사업별 세출예산 과목 개편에 따라 세세부사업(1레벨) 설정 재구조화

○ 예산편성 기준경비

(단가: 원)

항 목	현 행	개 정
일·숙직 수당	일·숙직비 - 1일(야) 당 50,000	일·숙직비 - 좌동 ※ 다만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위원회 참석 수당	위원회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외부 위원 회의 참석 수당
강사수당	<신 설>	주)2.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5.강사수당 구분별 대상에 전현직 직급·경력자 포함
원고료	국문 - 시간당 3매 이내	국문 - 시간당 4매 이내
	파워포인트 - 단가 9,000 - 시간당 5면 이내	파워포인트 - 단가 7,000 - 시간당 8면 이내
	슬라이드	<삭 제>
	<신 설>	주)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활용하여 제출한 원고료 지급 기준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수정: 해당 원고료의 50% 지급, 70% 초과 수정: 전체 지급 2. 원고료 항목·구분간 중복지급 불가

항 목	현 행	개 정
제작료 및 출연료	<신 설>	주) 5분 미만 녹음·콘텐츠 제작 시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통·번역료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번역료 중략 ▶통역료 (중략) ※ 본 기준을 참고하여 통역난이도, 통역자의 경력, 통역 인력풀 수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자산취득비	전화기 녹화기 콘스피커 냉난방기(천장형)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태블릿 PC 700,000 캐비닛 340,000 이동형파일서랍 120,000
시설비	학생배치시설 기준 단가 ▶토목공사비(교) 1,035,000,000 ▶조경시설(교) 200,000,000	학생배치시설 기준 단가 ▶토목공사비(㎡) 107,000 ▶조경시설(㎡) 20,000
	개·보수 시설비 단가 ▶교실철거(실) 7,000,000 ▶운동장(㎡) 60,000 ▶외부 도색	개·보수 시설비 단가 ▶교실철거(㎡) 150,000 ▶운동장(㎡) 65,000 ▶외부 도장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0호(2011.12.8.))	좌동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1.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2.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한 기준 경비
3. 예산편성 지침 기준경비



IV.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1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가 인건비

구분	지급 근거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상여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2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나 여비

구분	지급 근거
국내여비 (220-01)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별표 5, 별표 8 등
국외여비 (220-02)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6의2 등

2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한 기준 경비

-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부훈령 제384호, 2021.8.9. 일부개정]
- ❖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제59호, 2020.12.1. 일부개정]

가 예비비

기준액(비율)	비 고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

나 일시차입금

기준액(비율)	비 고
예산총액의 10% 이내	전년도 수준 유지

다 지방채

한도액	비 고
자율발행 가능지수×경상일반재원×100/100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적용

※ 자율발행 가능지수=1-((일반채무* + BTL임대료 + 우발채무 총액의 50%) / 경상일반재원)

* 일반채무(이자제외)=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 기준

※ 경상일반재원=교부금 + 법정이전수입 + 자체수입

※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함

라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근 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

□ **경비성격**

○ **(기관운영)** 시·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 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도교육청(본청)은 3급(상당) 이상(다만, 기획관, 감사관 등 국장급 4급 보조·보좌기관 포함 가능), 교육지원청은 4급(상당) 이상, 직속기관은 기관장 편성(본청 및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하 편성 불가)

○ **(사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및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목적에 따라 사업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관운영 정책사업에 편성 금지

□ **기 준 액**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구 분	한도액 기준
서울·경기	예산규모의 0.09%이내
기타 시도	예산규모의 0.12%이내
제주	예산규모의 0.31%이내

2)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30-01)

□ **경비성격:** 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기준액

(단위: 천원)

구분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비고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국장	기관장	
기준액	96,800	43,500	10,800	24,000	4,000	5,000	연간
인원	1명	1명	3명	2명	4명	12명	

3)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30-01)

□ 경비성격: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기준액 (1인당 연간 금액)

정원	100명까지	101~300명까지	301~600명까지	601~800명까지	801명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주 1) 기준액: 훈령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 적용

2) 적용대상: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각급 학교 제외)

3) 적용기준: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예산편성년도 10. 1.기준)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4) 부서운영경비 (210-15-02)

□ 경비성격: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 가능

○ 부서운영경비(210-15-02)에 사용하기 위해 운영비(210) 예산 변경사용 금지

□ 기준액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

○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 단일기관(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

: 1개 과로 인정(예산 편성년도 10.1. 기준)

구 분	기 준 액
정원 5인 이하 실·과	월 100,000원
정원 10인 이하 실·과	월 175,000원
정원 15인 이하 실·과	월 250,000원
정원 20인 이하 실·과	월 300,000원
정원 25인 이하 실·과	월 350,000원
정원 30인 이하 실·과	월 400,000원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 시	월 5,000원 추가

※ 교육감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 근로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5)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50-02)

□ 경비성격: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직 위	월 액	연 액	
정무직	시·도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기 관 장	900 (1,025)	10,800 (12,300)	
일반직	시·도부교육감 (서울특별시부교육감) 부 기 관 장	700 (900)	8,400 (10,800)	
	1 급	기 관 장	750	9,000
		보 조 기 관	700	8,400
	2·3급	기 관 장	650	7,800
		보 조 기 관	600	7,200
	4 급	기 관 장	400	4,800
		보 조 기 관	350	4,200
복 수 직		150	1,800	
5 급	시·도교육청(본청)과장	350	4,200	
	기 관 장	150	1,800	
	보 조 기 관	100	1,200	
6·7급	기 관 장	100	1,200	
	보 조 기 관	50	600	
교 원	유·초·중등·특수학교장	250	3,000	

※ 교육전문직 기관장 및 보조기관은 일반직 상당 직급으로 계상

- 주1) 가산금: 각급 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3,000원 가산 (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통신중·고 학급 및 분교 포함)
- 2)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여 시·도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책급여무수행경비” 기준액 직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 3) 교육감, 부교육감 및 3급 이상 실·국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4) 직제에 의한 보좌기관은 당해 직급 보조기관 기준액을 적용한다.

마 특정업무경비

□ **근 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

□ **경비성격**: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기준액**

○ 지역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다만, 현재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담당부서의 정원이 늘어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산출예시)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2억원, '16~'18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 10%인 경우
 ⇒ (총액한도) = 2.1억원 (2억×(1+(10%/2)))

○ 지급대상 및 지급액 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 지급 대상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담당급 이하)에게 지급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의 직원도 적용 가능

○ 특정 업무 경비 상호 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

○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가 아닌 직무수행경비이므로 ‘(단위사업)기본운영비’ 등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

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 경비성격: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 편성·집행기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편성 최소화

기준액(비율)	비 고
본예산액의 0.1% 이하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적용

- 경상비, 시설비, 교육시책사업비로 구분·집행(경상비는 10% 초과 금지)
- 여비, 업무추진비, 교직원 복지지원 및 건당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집행 불가
- 건당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반드시 해당 사업에 예산편성 후 집행

※ 감사원 지적사항 : 예비비와 성격 중복, 경상비 및 시설비 집행 과다 등

3 예산편성지침 기준 경비

- ❖ 본 기준 경비는 예산편성 단가 등을 설정하기 위한 포괄적 기준임.
-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기준 준수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2021. 1. 1. 시행)
 -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2021. 4. 21.)

가 인건비

□ 공무원 인건비

- 정·현원, 호봉승급, 처우개선을 및 부담금 인상률 등에 대한 예측도를 제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
 - ※ 지방공무원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편성
- 명예퇴직수당을 적극 반영하여 인건비 절감 노력

□ 계약제 교원 인건비

-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는 지난 연도 채용실적 및 증가추세 등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인원을 예측하여 예산 편성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노동정책과’ 등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 6개월 이상 채용 예정자: 교육공무직원 정수에 반영된 자에 한함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근로자 채용 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
 - 처우개선 계획 등에 근거하여 직종별 인건비 단가를 산출하되,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산출기초 작성 시 임의기준 적용 금지
- 일상적인 행정보조원 일용직인건비는 예산 편성 지양

나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비 총액 산정

- 산정기준: 각 기관(부서)별 최근 자료 재원 분석 결과, 기관별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
- 기관운영비 구성
 -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여비, 특근매식비, 특별실 경비
 - 기관공통운영비: 기관 공통운영비(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예산편성: 기관(부서)별 한도액 내에서 예산 편성

□ 세부항목별 편성 기준

○ 일반수용비

- 각 기관(부서)별 3년간 재원 분석 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관별 1인당 편성 기준액 적용

구 분	1인당 연간 기준액	편성액
본청 각 부서	750,000원	기관(부서)별 정원 × 1인당 기준액
교육지원청	750,000원	
직속기관	650,000원	

○ 특별실 경비: 기관 부속실 운영 경비

구 분		연간 기준액	편성부서
본청	교육감실	2,000,000원	총무과
	부교육감실	1,200,000원	
	국장실	800,000원	
교육지원청	교육장실	1,000,000원	학교운영지원과 (국장실: 통합 운영)
	국장실	500,000원	
직속기관	기관장실	500,000원	

- 여비 및 특근매식비: 여비 및 특근매식비는 기관(부서)별 한도액 내에서 기본운영비에 편성하되, 기타 세부사업에 별도 편성 금지
 - 장기 파견연수 관련 등 사업성 경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도 근거가 없을 경우 별도 임의 편성 금지

○ 기관공동운영비

- 편성기관: 본청(공보담당관, 총무과), 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 직속기관
- 경비성격: 단위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성 경비 등 기본경비

※ 기관공동운영비 편성 범위

-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의 운영비(210목) 중 공공요금및체세(210-02), 피복비(210-03), 운영수당(210-06), 임차료(210-07), 연료비(210-08), 시설장비유지비(210-09), 차량선박비(210-10), 용역사업비(210-13), 기타일반수용비(210-15)
- 본청 운영비(210) 중 직원수첩, 일람표, 의전행사, 친선체육대회, 동호회 및 연구회모임, 행사지원비 등
 - 일반수용비(210-01)목에 공공요금 및 체세(210-02), 시설장비유지비(210-09), 용역사업비(210-13) 등 편성 금지

다 특정업무경비

(단위: 월, 원)

구 분	지급 대상	지급액
감사	·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100,000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4급 이하)	80,000
학생수용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 담당공무원(과장 이하)	100,000
예산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150,000
평생교육 (학원)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80,000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60,000
학교보건 (교육환경보호)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80,000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60,000
교원·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단체	· 시·도교육청 교원·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담당과장	80,000
	· 시·도교육청 교원·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담당공무원(5급 이하)	60,000
회계	· 시·도교육청 복식부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회계·계약 담당공무원(5급 이하)	60,000
여론·동향	· 시·도교육청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 이하)	100,000
법무	· 시·도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과장	80,000
	· 시·도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60,000

라 주요 경비 단가

1) 일반수용비

세 목	구 분	세 부 항 목	단위	단가(원)	비 고	
일반 수용비	토너	레이저프린터	종	200,000	정품	
		FAX	종	120,000	정품	
	복사용지	A4	상자	19,000		
		B4	상자	30,000		
	도서구입비	전문	권	20,000		
		교양	권	15,000		
		아동	권	8,000		
	정화조청소	기본료(750 l 까지)		14,687		
		초과료(100 l 당)		1,617		
	신문공고료	1단 1cm		77,000	VAT 포함	
	간행물	일간지	월	15,000		
		월간지	월	15,000		
상 패	1개 기준	개	100,000	표창, 감사, 공로패		
숙박비	숙박비	1인당 1야 기준	야	50,000	※ 예산편성목 - 급량비성: 숙박비(210-04) - 그외: 임차료(210-07)로 편성	
특근매식비	매식비	특근매식비, 을지연습 등	회	8,000		
급량비	급량비	시험업무, 교육훈련기관 등의 단체급식성 급량비	식	8,000	※ 예산편성목 - 급량비(210-04)로 편성	
	행사급량비	1인 1식 기준	식	8,000	※ 예산편성목	
	주식비	1박2일 이상 워크숍 등	식	10,000	- 사업추진업무추진비(230-02)로 편성	
임차료	차량	광주 인접	버스(대형)	일	250,000	화순, 나주, 장성, 담양
			화물차(소형)	일	100,000	
		전라도 인근	버스(대형)	일	500,000	전남(기타), 전북, 경상도, 충청도
			화물차(소형)	일	200,000	
		기타	버스(대형)	일	700,000	서울, 경기도, 강원도
			화물차(소형)	일	350,000	
	승용차		일	90,000	2000cc 이하	
시설임대	교실	실	30,000	공유재산관리조례 (4시간초과~8시간이하)		
	시청각실	실	100,000			
	체육관, 강당, 운동장	일	100,000			

2) 여비

세 목	구 분	세 부 항 목	단 위	단 가
여비	관내	여비편성 기준	회	20,000원
	관외		회	130,000원
	국외여비		회	공무원 여비 규정
	이전비		회	공무원 여비 규정
	외빈초청 여비	항공임	회	초청 인사의 직급에 맞는 항공임 적용
		숙박비	야	주 빈 250,000원 수행원 75,000원
식비		식	주 빈 50,000원 수행원 30,000원	

3) 일·숙직 수당

- 경비성격: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 기준액

구 분	세부항목	단 위	단가(원)	비 고
일·숙직비	일직비	1일	50,000	운영수당
	숙직비	1야	50,000	

※ 다만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4) 위원회 참석 수당

- 경비성격: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당
- 기준액

구 분	단 위	단 가(원)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일 당	·기본료: 70,000 ·초 과: 30,000	2시간 이상 회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초과분 지급 가능

5) 일반 강의 강사수당

- 경비성격: 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 운영, 공무원 직무교육 등 강사수당
- 기준액

구분		대상	단가(원)
특별 강사	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1시간 300,000 초과시간당 200,000
	2	○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교육 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기본 1시간 200,000 초과시간당 150,000
일반 강사	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과장 직위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유초·중등학교장 ○ 5급 공무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해당분야 시민단체(활동가) 활동경력 10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 이외의 강사	기본 1시간 160,000 초과시간당 90,000
	2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시민단체(활동가)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 1시간 90,000 초과시간당 60,000
	3	○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기본 1시간 70,000 초과시간당 40,000
		○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기본 1시간 50,000 초과시간당 30,000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전산 보조 제외)	기본 1시간 40,000 초과시간당 20,000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 1시간 30,000 초과시간당 15,000
다수인 (그룹) 강사	○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 활동으로 다수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기본: 4인, 2시간 기준 / 초과 : 1인당)	기본료 500,000 초과 각 50,000	

- 주) 1. 30분 미만 강의 시 1시간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2.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3. 강사수당 구분별 대상에 전·현직 직급·경력자 포함
4.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강사로 할증 적용 가능
(100명 이하: 20%, 101~200명: 30%, 201~300명: 40%, 301명 이상: 50%)
5. 교육연수원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로 할증 자체 기준을 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

6) 원고료

항 목	구 분	지 급 기 준	단가(원)
원고료	국 문 (외국어)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mm, 좌우여백 25mm - 매당 [시간당 4매 이내]	14,000
	파워포인트	○ 면당 [시간당 8면 이내]	7,000
	도서발행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mm, 좌우여백 25mm - 매당 [지급한도액 300,000원(권당, 1인 기준)]	10,000
일러스트 삽화(사진)		○ 매 ○ 표지	40,000 80,000

- 주)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활용하여 제출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 조정
 -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수정) 해당 원고료의 50% 지급, (70% 초과 수정) 전체 지급
 2. 원고료 항목·구분 간 중복지급 불가

7) 제작료 및 출연료

구 분	지 급 기 준	단가(원)
녹음 제작	○ 10분 [40매]	100,000
콘텐츠 제작	○ 10분 [1시간 수업용, 동영상]	150,000
영상 등 출연료	○ 편당 한도	30,000

주) 5분 미만 녹음·콘텐츠 제작 시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8)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단가(원)
출제비	객관식	소속직원(채용 등)	문제당 10,000
		외부전문가(채용 등)	문제당 30,000
		기타(연수운영 등)	문제당 3,500
주 관 식		과목당	50,000

구 분		단 위	단가(원)
채점비	객 관 식	10문제당	11
	주관식(기본)	10부까지	40,000
	주관식(초과)	부당	1,000
문제선정심의비		과목당	50,000
문제편집, 편찬비		일당	30,000
시험감독(관리)비 (일당)	평일	4시간 미만	40,000
		4시간 이상	60,000
		8시간 초과	80,000
	휴일	4시간 미만	60,000
		4시간 이상	80,000
		8시간 초과	100,000
면접·실기채점비(일당)		4시간 미만	60,000
		4시간 이상	80,000
합숙비(보안수행비)		기준액	50,000

- 주) 1. 합숙비(보안수행비)는 연속 12시간 이상 감금상태에서 문제출제, 선정, 편집·편찬, 관리 등을 담당할 경우에 한하되, 전체 감금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기준액에 곱하여 지급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2.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에 별도 단가 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예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3.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 기준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교육감 결재를 받은 경우 허용

9) 심사 수당 (심의·지도·편집수당 포함)

구 분		단가(원)	비 고
심사(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 래 인	교수 전문가 · 기본 60,000 · 초과 20,000	기본: 3시간 기준 초과 - 기본 3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운영의 경우 1일 2회 초과 가능
		일반인 · 기본 40,000 · 초과 10,000	
	공무원, 교육공무직	· 기본 40,000 · 초과 10,000	

10) 각종 연구모임 및 동호회 지원비 기준

구 분	단가(원)	비 고
연구 동아리	3,000,000	동아리 10명 기준
교직원 동호회	2,000,000	동호회 10명 기준
학생 동아리	1,500,000	동아리 20명 기준
학부모 동아리	1,000,000	동아리 10명 기준

주)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혼합 구성된 동아리(동호회)의 경우, 소요경비를 적절히 판단하여 제시된 기준 경비 중 선택 적용

11) 보상금 및 포상금

- 지급단가

세 목	구 분	단 가	비 고
보상금 (310-01)	민간행사급량비	1인 1식 기준 8,000원	1박 2일 이상 워크숍 등은 10,000원 적용 가능
	민간행사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민간행사숙박비		
포상금 (310-03)	기타 포상금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	학교 단위 포상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

- 포상금 세부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 분	편 성 기 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참여			
개 인	학 생	50	30	20	10	5		
	교직원	1,000	500	100	50	5	코치, 강사포함	
	학부모	300	100	50	30	10	일반시민 포함	
단 체	동아리	500	300	200	100	5	참여 1인당, 동아리 10명 기준	
	학 급	500	400	300	150	100	급당 35명 기준	
	학교	학교(재정)평가	10,000	8,000	5,000	3,000		
		특정분야평가	5,000	3,000	2,000	1,000		

- 주) 1.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은 후 지급 가능
 2. 선심성·행사성·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3.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없음
 4. 격려금, 위문간담회 경비, 협의회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의 보상금은 일반운영비에 편성 금지
 5. 기관 포상은 계획수립 시 최소한의 지침을 설정하여 소모적·비교육적 집행 지양

12) 통·번역료

구분	지급 기준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13) 자산취득비

구분	규격	단위	단가(원)	구분	규격	단위	단가(원)
사무용책상	편수	개	225,000	모니터	21.5"LED	대	280,000
	양수	개	300,000	노트북	Inter Core i5	대	1,500,000
컴퓨터책상	800×600×720	개	250,000	프린터	잉크젯 A4	대	300,000
회의용책상	1,200×800×720	개	125,000		레이저 A4, 흑백	대	420,000
사무용의자	오피스	개	160,000		레이저, A4, 컬러	대	880,000
회의용의자	회의실용	개	50,000		레이저 A3	대	700,000
책장	900×450×1,950	개	654,000	TV	50~56" LED	대	1,950,000
진열장	800×572×2024	개	450,000		32" LED	대	690,000
청소도구함	630×405×1230	개	264,000	스캐너	6400dpi	대	500,000
열람대	2,100×1,200×700	개	528,000	전자복사기		대	4,000,000
도서도난방지	감응기	대	15,000,000	인쇄기	디지털윤전등사기	대	5,000,000
냉난방기	스탠드형	대	2,000,000	플로터	914mm 기준	대	5,000,000
냉장고	250L 이상	대	400,000	모사전송기	사무용	대	500,000
청소기	건습식	대	280,000	비디오프로젝터	3000ANSI	대	2,000,000
문서세단기	280mm 이상	대	800,000	비디오카메라	Full HD	대	1,100,000
제본천공기	자동, 120매 이상	대	1,000,000	디지털카메라		대	500,000
공기청정기	66㎡	대	520,000	실물화상기	500만화소	대	1,100,000
태블릿PC		대	700,000	캐비닛		개	340,000
컴퓨터	Inter Core i5	대	1,200,000	이동형파일서랍		개	120,000

※ 예시기준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참조

마 시설비

1) 학생배치시설 기준 단가

- 초등학교

(단위: m², 천원)

구 분	1실당 기준면적	㎡당 단가	실별 내역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
보통교실	82.62	1,376	113,685	8,235	121,920
특별교실	165.24	1,432	236,623	11,688	248,311
시청각실	165.24	1,376	227,370	11,688	239,058
도 서 실	165.24	1,376	227,370	6,299	233,669
상 담 실	41.3	1,376	56,829	1,442	58,271
관 리 실	82.62	1,376	113,685	4,478	118,163
보건위생 및 편의실	82.62	1,376	113,685	1,955	115,640
교재연구실	41.3	1,376	56,829	2,580	59,409
화 장 실	30.37	2,686	81,574	171	81,745
문서고, 등사실	41.3	1,376	56,829		56,829
통 제 실	30.37	1,376	41,789		41,789
창 고	30.37	1,284	38,995		38,995
강 당	750	1,950	1,462,500		1,462,500
급식시설	650	1,880	1,222,000		1,222,000
(구분: 24학급 기준)	780	1,880	1,466,400		1,466,400
수배전실	73.5	1,348	99,078		99,078
기 계 실	120	1,376	165,120		165,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		52,200
계 단 실	1개소	1개소	51,561		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필 로 티	1개소	1개소	70,120		70,120
기초과일	1교	1교	260,000		260,000
토목공사비		107			
기타(전기인입 및 상수도불입금)	1교	1교	90,000		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신·재생에너지시설	1교	1교	800,000		800,000
조경시설		20			
친환경인증비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1교	1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일부개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설계비					

- 중 · 고등학교

(단위: m², 천원)

구 분	1실당 기준면적	㎡당 단가	실별 내역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
보통교실	85.68	1,376	117,896	8,235	126,131
특별교실	171.36	1,432	245,387	11,688	257,075
시청각실	171.36	1,376	235,791	11,688	247,479
도 서 실	171.36	1,376	235,791	6,299	242,090
상 담 실	42.84	1,376	58,948	1,442	60,390
관 리 실	85.68	1,376	117,896	4,478	122,374
보건위생 및 편의실	85.68	1,376	117,896	1,955	119,851
교재연구실	57.12	1,376	78,597	2,580	81,177
화 장 실	31.5	2,686	84,609	171	84,780
문서고, 등사실	42.84	1,376	58,948		58,948
통 제 실	31.5	1,376	43,344		43,344
창 고	31.5	1,284	40,446		40,446
강 당	750	1,950	1,462,500		1,462,500
급식시설 (구분: 24학급 기준)	650	1,880	1,222,000		1,222,000
	780	1,880	1,466,400		1,466,400
수배전실	73.5	1,348	99,078		99,078
기계실	120	1,376	165,120		165,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		52,200
계 단 실	1개소	1개소	51,561		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필 로 티	1개소	1개소	70,120		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000		260,000
토목공사비		107			
기타(전기인입 및 상수도불입금)	1교	1교	90,000		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신 · 재생에너지시설	1교	1교	800,000		800,000
조경시설		20			
친환경인증비	1교	1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일부개정]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설계비					

2) 개·보수 시설비 단가

(단위 : 원)

시 설 명		단위	금 액	시 설 명		단위	금 액	
교실 철거(R·C조) (폐기물처리비포함, 석면처리비 별도)		m ²	150,000	포장 시설		m ²	130,000	
이중창 보수 (이중창호,4개소)		실	17,146,000	스탠드 시설		m	350,000	
노후 출입문 및 창문 보수	스틸후레임+목재창호	실	6,649,000	야외단상		개소	50,000,000	
	플라스틱창호	실	4,500,000	배수로		m	410,000	
교실 바닥 보수 (90m ² 기준, 복도포함)	목재마루	실	14,815,000	우천로		m ²	510,000	
	비닐바닥재(쉬트, 타일)	실	6,600,000	운동장		m ²	65,000	
노후 화장실 개보수		m ²	2,118,000	급수대	개소	20,000,000		
교실 개조		실	30,000,000					
천장보수 (전등미포함)	최상층	실	9,200,000	조정석		m ²	470,000	
				옹벽		m ²	430,000	
	기준층	실	5,100,000	담장	신설		m	450,000
					철거 후 신설		m	590,000
무석면텍스 철거(천장틀 포함)		실	1,900,000	수·배전반 제조		면	25,000,000	
지붕방수(90m ² 기준)		실	12,100,000	전기 인입공사비		m	200,000	
내부 도장(친환경, 90m ² 기준)		실	1,200,000	교실 조도개선		실	2,500,000	
외부 도장		m ²	10,900	교실 조도개선(배관,배선,교체포함)		실	4,100,000	
외벽 교체		실	10,905,000	전기 승압공사		개소	5,000,000	
샤워실, 탈의실 개보수		m ²	1,650,000	소방시설 개선		개소	5,500,000	
계단실 보수(러버타일, 45m ² 기준)		개소	5,000,000	물탱크 교체		톤	1,255,000	
벽체 보수		m ²	50,000	천장형 냉난방기		실	6,600,000	
외벽방수(조적면)(실리콘뽀칠 2회)		실	500,000	급수배관 교체		m	164,000	
석면텍스 철거(90m ² , 청소/이사/폐석면처리/농도측정/석면감리 포함)		실	9,500,000	도시가스 배관교체		m	250,000	
교실안전난간 설치(스텐, 복도포함)		실	800,000					

바 토 지

1)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 2016.09.01.)

-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0.8배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1.2배까지)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0.8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96,000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 0.8	695,000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794,000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 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56,000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0.8	1,145,000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1,334,000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16,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0.8	4,345,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5,174,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6,316,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0.8	7,845,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9,374,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516,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 0.8	31,845,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38,174,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 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16,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0.8	56,845,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174,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09,516,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0.8	136,845,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174,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81,516,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0.8	226,845,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272,174,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1.2
1조원 초과	245,516,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 0.8	306,845,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368,174,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 1.2

사 기 타

본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종전 기준, 별도 단가 기준, 실거래가 등에 따른다.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3.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세세부사업 설정



V.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30.] [교육부령 제76호, 2015.10.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영)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시·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산수입과 수업료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존재원) ① 시·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채)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제8조(기준경비)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시·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부 칙 <제76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세출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교육청이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 2021. 8. 9.] [교육부훈령 제384호, 2021.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설정하여 시·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기준경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84호, 2021. 8. 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업무추진비 기준경비(제3조 관련)

1.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기관운영) 시·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사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및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목적에 따라 사업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단,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에 편성 금지)

② 기준액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범위내에서 자율결정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구 분	한도액 기준	비 고
○ 서울·경기	○ 예산규모의 0.09% 이내	
○ 기타 시·도	○ 예산규모의 0.12% 이내	
○ 제주	○ 예산규모의 0.31% 이내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도교육청(본청)은 3급(상당) 이상(다만, 기획관, 감사관 등 국장급 4급 보조·보좌기관 포함 가능), 교육지원청은 4급(상당) 이상, 직속기관은 기관장 편성(본청 및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하 편성 불가)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까지	301~600명까지	601~800명까지	801명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주] 1) 적용대상 :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각급 학교 제외)

2) 적용기준 :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예산편성년도 10.1. 기준)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공무직, 정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3.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① 경비성격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천원)

구 분	직 위	월 액	연 액	
정무직	시·도교육감	900	10,800	
	(서울특별시교육감)	(1,025)	(12,300)	
일반직	시·도부교육감	700	8,400	
	(서울특별시부교육감)	(900)	(10,800)	
	1 급	기 관 장	750	9,000
		보조기관	700	8,400
	2·3급	기 관 장	650	7,800
		보조기관	600	7,200
	4 급	기 관 장	400	4,800
		보조기관	350	4,200
	5 급	시·도교육청(본청) 과장	350	4,200
		기 관 장	150	1,800
보조기관		100	1,200	
6·7급	기 관 장	100	1,200	
	보조기관	50	600	
교 원	유·초·중등·특수학교장	250	3,000	

※ 교육전문직 기관장 및 보조기관은 일반직상당 직급으로 계상

- 주 1) 가산금 : 각급 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3,000원 가산 (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통신중·고 학급 및 분교 포함)
- 2)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여 시·도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준액 직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 3) 교육감, 부교육감 및 본청 3급 이상 실·국장은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4) 직제에 의한 보좌기관은 당해직급 보조기관 기준액을 적용한다.
-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 편성 가능

4. 부서운영경비

-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 가능)
- ② 기 준 액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
 - 기관장이 4급이하인 지방단일기관(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 : 1개과로 인정(예산편성년도 10.1.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월 100,000원	
정원 10인이하 실·과	월 175,000원	
정원 15인이하 실·과	월 250,000원	
정원 20인이하 실·과	월 300,000원	
정원 25인이하 실·과	월 350,000원	
정원 30인이하 실·과	월 400,000원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5,000원 추가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5. 특정업무경비

① 경비성격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준액

-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다만, 현재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담당부서의 정원이 늘어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산출예시)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2억원, '16~'18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 10%인 경우 ⇒ (총액한도) = 2.1억원 (2억×(1+(10%/2)))

- 지급대상 및 지급액 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 지급 대상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담당급 이하)에게 지급(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
- 특정 업무 경비 상호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

별표 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 관련)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10000			이전수입			
		1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1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101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의하여 통지된 보통교부금	
			11102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교부금	
			11103 증액교부금	증액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의하여 통지된 증액교부금	
			11200 국고보조금			
			1120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11400 특별회계전입금			
			1140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회계전입금	
			1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100 법정이전수입			
			12101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 제151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지방교육세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전입금	
				지난연도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교육세전입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	
			12102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난연도담배소비세전입금	○ 담배소비세전입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담배소비세전입금)	
			12103 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도세 전입금 ○ 균특회계 시도 전환사업 보전금(2022년 12월 31까지 유효)	
				지난연도시도세전입금	○ 시도세전입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시도세전입금)	
			12104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지난연도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21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12106 교육급여보조금	광역자치단체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기초자치단체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12107 무상교육경비전입금	광역시치단체무상교육경비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기초자치단체무상교육경비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12200 비법정이전수입			
			1220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광역공립공공도서관 운영비부담금	○ 도서관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광역급식비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 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광역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광역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광역교육과정 자체 개발 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경비	
				광역교육과정 운영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경비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립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광역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광역기반시설부담금	○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 부담금	
				기타광역자치단체보조금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220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금	○ 도서관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급식비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교육과정 자체 개발 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경비	
				교육과정 운영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경비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립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기반시설부담금	○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 부담금	
				기타보조금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12203 국고지원전입금	국고지원전입금	○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12204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탄력세를 적용으로 추가 확보되는 전입금
			16000 기타이전수입			
			16100 민간이전수입			
			16101 기부금	일반기부금	○	일반 기부금(용도 미지정기부금)
		특정기부금		○	연구목적 이외의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연구기부금		○	연구목적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민간부담금		○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으로 받는 자금	
			16102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수입 ○ 기관, 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정보화 촉진기금 등)
			162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6201 전입금	전입금	○	자치단체 간 전입금
			20000 자체수입			
			21000 교수학습활동수입			
			21100 기본적교육수입			
			21101 입학금	입학금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
		21102 수업료		수업료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
		21103 지난연도입학금		지난연도입학금	○	지난연도 입학금 수입
		21104 지난연도수업료		지난연도수업료	○	지난연도 수업료 수입
			21200 선택적교육수입			
			21201 기숙사및급식	급식비	○	단체급식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기숙사비	○	기숙사 사용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21204 평생학습수입	수강료수입	○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 수입
				기타평생학습수입	○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를 제외한 수입
			22000 행정활동수입			
			221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22101 사용료수입	토지사용료수입	○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시설물사용료수입	○	시설물 사용료 수입(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등)
				입장료수입	○	공연장, 과학관, 체험관 등의 시설물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수입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사용료수입
			22102 수수료수입	입학수험료	○	학교 입학수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입학수험료 수입 및 전형료
				검정수수료	○	자격검정 및 채용시험, 기타 검정시험 수수료수입
				제증명수수료	○	제증명수수료수입
				증지판매수입	○	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증지판매수입
				기타수수료	○	독촉수수료 등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22200 특별부과금및분담금			
			22201 특별부과금	특별부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3호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특별부과금을 계상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는 특별부과금
			22202 분담금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분담금을 계상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는 분담금
			23000 자산수입			
			23100 자산임대수입			
			23101 임대료수입	토지임대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 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임대수입(폐교부지, 구외부지, 정착물설치 위한 부지 등)
				건물임대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에 대한 임대 수입(자판기·매점·복사기 설치 등을 위한 건물 임대)
				기타자산임대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재산 임대 수입(물품 임대 포함)
			23200 자산매각대			
			23201 토지매각	토지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임야 등) 매각수입
			23202 건물매각	건물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매각수입
				구축물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작물 매각수입
			23203 기계장치매각	기계장치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을 제외한 기계요소공작기계, 산업기계, 의료화학 분석기기, 물리시험측정기기, 기타실험장비, 기타잡기기 및 교육연구용 교구 매각수입
			23204 기타유형자산매각	전기통신기기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기기 매각수입
				사무용기기및집기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및 기타집기비품매각수입
				도서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 매각수입
				선박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매각수입
				항공기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매각수입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매각수입
				박물관유물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물관유물 매각수입
				입목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목 매각수입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의 기타유형자산 매각수입
			23205 무형자산매각	특허권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 매각수입
				저작권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 매각수입
				소프트웨어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 콘텐츠 매각수입
				실용신안권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신안권 매각수입
				의장(디자인)권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장(디자인)권 매각수입
				상표권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표권 매각수입
				상호권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권 매각수입
				전신전화보증금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체재산에 포함된 전신전화 보증금에 대한 회수분
				기타무형자산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항목을 제외한 기타무형자산 매각수입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24000 이자수입			
			24100 이자수입			
			24101 예금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 기타예금이자	○ 정기예금이자 수입 ○ 정기예금이자수입을 제외한 이자 수입 ○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세입조치 시 이자 수입을 포함	
			24102 용자금이자수입	용자금이자수입	○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7000 기타수입			
			27100 제재금수입			
			27101 변상금	공유재산변상금수입 기타변상금수입	○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공유 재산 변상금 수입 ○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기타 변상금 수입	
			27102 위약금	위약금수입	○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27103 연체료	공유재산연체료수입 기타연체료수입	○ 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 기타 연체료 수입	
			27104 과태료	과태료수입	○ 법령 및 조례에 의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23조 규정 등) 과태료 수입	
			27105 기타제재금수입	기타제재금수입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제재금 수입	
			27200 기타수입등			
			27201 생산물매각대	생산물매각대	○ 생산물 매각에 따른 수입	
			27202 동식물매각대	동식물매각대	○ 동식물 매각에 따른 수입	
			27203 그외수입	그외수입	○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27204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 회계연도 종료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 수입	
			27300 지난연도수입			
			27301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 지난연도 수입	
			30000 차입			
			31000 지방채			
			31100 지방채			
			31101 지방채증권	장기지방채증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지방채 증권 발행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31102 금융기관차입금	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	
			31103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40000 기타			
			41000 전년도이월금			
			41100 순세계잉여금			
			41101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41200 보조금사용잔액			
			4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202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광역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기초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204 기타지원금사용잔액	기타지원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타지원기관에 반납 하여야 할 금액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300 이월금			
			41301 전년도이월사업비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 전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 전년도에 이월된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42000 예치금회수			
			42100 예치금회수			
			42101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43000 금융자산회수			
			43100 융자금원금회수			
			4310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단기민간융자금 장기민간융자금 학자대여금	○	교육청이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 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및 기타 민간 부문에 대하여 빌려준 자금 회수 ○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대여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에 대한 회수액(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별도 계상)
			43300 보증금 회수			
			43301 보증금회수	단기임차보증금회수 장기임차보증금회수 단기기타보증금회수 장기기타보증금회수	○	단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 장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 단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 장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50000 내부거래			
			51000 전입금			
			51100 전입금			
			51101 기금전입금	기금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2000 예탁금및예수금			
			52100 예수금수입			
			52101 예수금수입	예수금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예수금 수입
			52200 예탁금회수			
			52201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52202 예탁금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

※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원가통계목명을 추가, 삭제할 수 있다.

별표 3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제5조제1항 관련)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50]교육						
[051]유아및초중등교육						
[01]인적자원운용						
[03]교직원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 연수 등 공무원 및 근로자의 역량 강화 경비 		
[01]교원연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연수 여비(국내·국외여비) 등 연수지원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원연수, 전문직연수, 교원국외연수, 교원정보화연수 등 ○ 교원 장기 국외 유학연수 등 교원의 국외연수 경비 ○ 교원의 각종 연찬회 운영에 따른 제 경비(교장 및 전문직연찬회 등) ○ 자율연수 ○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 등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 관련 제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사이버연수 등 		○
[03]지방공무원연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연수 여비(국내·국외여비) 등 연수지원 경비 ○ 관리자 장기국외연수 및 고급간부과정 국외연수 등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경비 ○ 직원능력개발비,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 경비(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등) ○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 교육지원청 자체연수 ○ 지방공무원연찬회, 교육행정워크숍, 직장교육 등 ○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 등 시도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일반연수, 지방공무원 사이버연수 등 		
[04]근로자연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직원 등 공통연수 운영 경비 ○ 교육공무직원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자체 공통연수 및 워크숍 ○ 근로자 공통 위탁교육과정 ※ 급식위생교육 등 직종별 전문연수 경비는 해당 사업비로 편성 		
[05]교직원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01]교원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및 전문직 임용시험 관련 제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원, 전문직 임용시험 관련 경비 ○ 사립교원 특별채용 및 인사교류 등 제반경비 ○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험 및 시험관리 ○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 교원 훈·포장 전수식, 각종 표창, 행사 등 상훈관리 운영 ○ 교원초빙·공모제 운영비 ○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제 경비 ○ 교원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 교원 및 교육전문직 평정업무 운영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3]순회교사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임순회교사, 보건교사및영양(교)사, 전문상담 및 치료교사 등 순회여비 및 운영비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담당교원 수당 	
				[04]지방공무원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제반 경비 - 지방공무원 공채 및 특채, 승진시험 관리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 지방공무원 훈·포장 전수식, 각종 표창, 행사 등 상훈관리 운영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운영 	
				[05]근로자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제반 경비 ◦ 근로자 훈·포장 전수식, 각종 표창, 행사 등 상훈관리 운영 ◦ 근로자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 근로자 평정업무 운영 	
				[08]교직원복지	◦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진작 경비	
				[01]교직원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동호회 운영 지원 경비 ◦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체육대회, 스승의날, 예술제 등) 관련 경비 ◦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 저출산 고통사회 극복 위한 소요 경비 ◦ 교직원 부조급여(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급) ◦ 교직원(자녀 포함) 대여학자금 부담금 ◦ 교직원 무이자·저리 대여사업 이차보전 ※ 공무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제외(공무원인건비에 편성) 	
				[02]교수학습활동지원		
				[01]교육과정운영	◦ 교육과정 운영 등 제반 경비	
				[01]교육과정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발, 연수, 홍보 및 각종 지원단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 제 경비 ◦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제 경비 - 각종 교과운영 제 경비 - 과학교과(과학교육운영,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 조성 사업 등) - 체육교과(학교스포츠강사 인건비, 학교체육수업 운영 등) - 예술교과(학교예술교육과정운영,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 - 외국어교과(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외국어보조강사 운영, 캠프운영, 체험센터, 국제 교류운영 등 학교외국어 교육 관련 운영경비 등) ◦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제 경비 ◦ 대학교육 선 이수과정 운영 경비 ◦ 자유학기(년)제 운영 경비 ◦ 고교학점제 운영(공동교육과정운영, 연수 및 홍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및 선도지구 운영,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듀테크활용교육,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고교 학점제지원센터 운영 등) ○ 교과교실제 운영 경비(시설비 제외) ○ 융합교육과정 운영 경비 ○ 창의인성체험교육 운영 등 제 경비 ※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 및 시설확충비 등 시설비성 경비, 각종 기자재확충 경비는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세부사업에 편성 	
				[03]교육자료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도서개발 보급에 필요한 제 경비 ○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재, 사회과 지역 교과서 개발 보급 ○ 무학년교과 수준별프로그램 개발 ○ 각종 교육자료 개발 보급 경비 	
				[05]특색교육과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자체 특색학교 및 지역교육과정 운영 제 경비(미래교육지구, 혁신학교, 행복학교, 국제학교 등) ○ 기타 시도 자체 특색교육과정 운영 ○ 컨설팅, 연수, 연구발표 등 ○ 학교 1특색사업 운영 등 특색사업 운영관련 제 경비 	
				[06]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 과학실험실현대화 및 과학관 구축·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 체육장비 구축,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학교 운동장 조성 포함) ○ 고교학점제 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 교과교실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운영비 제외) 	
				[02]학력신장및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력신장 제반 경비 ○ 학습부진아 지도 방법 개선지원비 등 ○ 기초학력진단평가 등 학생 학력평가 제반 경비 	
				[01]교실수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수업개선 등을 위한 지원 경비 ○ 교실수업개선 실천연구대회 및 학습지도연구대회 운영 경비 ○ 수업분석실 운영 ○ 우수교사인증제 운영 ○ 연구대회운영지원 ○ 수업선도교사 관리 운영 ○ 수업방법 개선 등 특별연구교사 관리 운영 	
				[02]학력향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회복, 기초·기본학력 정착 위한 학습경비 ○ 저소득층 학생 보충학습 운영 경비 ○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경비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재이수 등 운영경비 ○ 각종 경진대회 및 경연대회 등 	○
				[03]학력평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 자체, 시·도 연합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 운영 경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 자체, 시·도 연합 주관 학력진단평가 운영 경비 ○ 기타 학력인증평가 위한 운영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3]장학및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중등 장학활동 지원 및 교과교육 연구 운영·지원 제반 경비 	
				[01]현장중심장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장학자료 개발, 보급 및 장학 관련 협의회 운영 ○ 각종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제반 경비 ○ 학교 단위 장학활동 공모제 운영 ○ ICT 활용교육 장학지원제 운영 ○ 자율장학운영 및 컨설팅장학지원 ○ 수석교사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수석교사 수당, 시간감축수당 등 수석교사 멘토링제 운영, 연찬회, 워크숍 경비 등 수석교사제 운영 관련 제 경비 	○
				[03]연구시범학교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도·시·군 및 기타기관 연구시범학교 운영 ○ 각종 연구 실험 시범학교 지원 및 운영 관련 제반 경비 	
				[04]교육연구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연구지 및 학습우수사례 발간 ○ 교육연구지 발간, 교육정보화 학술지 발간 ○ 교육연구회 자료 개발·보급 ○ 교사와 장학사 결연 활동 ○ 자생적 연구활동 지원, 현장교육 연구활동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등 	
				[05]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경비 ○ 교수학습지원센터 포털사이트 운영 ○ 영상자료 제작 지원 ○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06]유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반 운영 등 유아교육 지원 경비 	
				[01]유아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지원활동 지원 ○ 유아교육정보자료실운영,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보급 ○ 유치원 학부모교실 운영 ○ 유치원 공동체험학습 운영, 지역별 유아교육네트워크 지원 ○ 교육자료 전시회 및 연찬회 운영 ○ 유치원 평가운영비 및 유치원 교원평가 ○ 유아교육활성화 추진 ○ 유아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 ○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직속기관인 경우 기본운영비는 기관기본운영비에 편성) ※ 사립유치원 제외 	
				[02]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설치 및 운영 ○ 유치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 ○ 방과후과정반 환경개선비 ○ 유치원 돌봄 운영(아침·저녁) ※ 유치원 방과후과정반비 지원은 제외(누리과정 지원에 편성) ※ 사립유치원 제외 	○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03]유치원 교육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 실내의 놀이기구 시설 지원 ○ 교재교구비 지원 ○ 유치원 CCTV 설치 ※ 사립유치원 제외 	
				[04]사립유치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 등 ○ 사립유치원 역량제고 사업 ○ 사립유치원 교육여건개선비 ○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등 처우개선비 ○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07]특수교육	○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지원 및 관리 경비	
				[01]특수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 운영 및 지원 경비 ○ 특수학급 증설(운영)비, 병원학교(급) 설치 운영 ○ 특수순회교육운영 및 순회치료교육 운영 ○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 ○ 특수학교 수준별 교재 제작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 특수교육 각종대회 운영 지원 ○ 장애인식개선 지원 	○
				[03]특수교육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지원 ○ 공무원 외 특수교육 지원 위한 사회복지요원 등 ○ 장애재활센터 운영 	○
				[04]특수교육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 특수학급 신·증설 등(※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신·증설하는 리모델링비) ○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08]영재교육	○ 영재교육 기관운영 및 추진에 필요 제반 경비	
				[01]영재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영재교실 및 영재학급(지역공동, 단위학교) 운영, 사이버 영재학급 추진 등 ○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판별도구 등 개발·확충 등 ○ 영재교육 홍보 등 영재교육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업경비 ○ 영재교육 연수 및 연구회 지원 ○ 영재교육 협력사업 지원 ○ 영재교육원 기본시설, 기자재확충, 운영비 등 지원 ○ 과학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
				[09]독서교육	○ 학교도서관활성화 등 독서교육활성화 경비	
				[01]독서논술교육운영	○ 독서논술관련 자료집 발간 및 자료 제작, 독서 동아리 및 연구회 지원 등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독서 관련 행사 지원 ○ 전국 도서관대회 운영 등 ○ 독서 논술 활성화 지원 	
				[02]학교도서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비 지원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 학교도서관 학부모 도우미(명예사서) 운영 ○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 독서관련 자료집 발간 및 대회운영 ○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13]직업교육	○ 특성화고 운영 등 직업교육에 따른 제반 경비	
				[01]직업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등 학생 기능신장 지원 ○ 직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 ○ 자영농수산물 운영 ○ 직업교육관련 각종 자료 발간 ○ 일반고직업교육과정 운영 ○ 마이스터고 육성 위한 제반 경비 ○ 직업계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 공동실습소 운영경비 ○ 직업교육 박람회 및 체험연수 등 	○
				[04]취업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창업지원 사업, 학교기업 지원 ○ 직업계고 취업기능 강화사업, 해외인턴십 지원 ○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비 지원, 현장실습 운영 지원 등 ○ 산학협력 교육과정운영 지원, 산학협력 취업지원 센터 운영 	○
				[05]직업교육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체제개편 지원 및 학과개편 기자재 확충비 지원 ○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경비 ○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14]학교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용 컴퓨터 보급 등 학교정보화 사업 제반 경비 ○ ICT 활용교육 지원 제반경비 	
				[01]학교정보화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용·교원용 컴퓨터 보급, 컴퓨터실 확충 ○ 정품소프트웨어 및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 어학실 및 방송실 장비 확충 ○ 멀티미디어실 설치 ○ 첨단 광학매체 보급 ○ 인터넷 학습환경 구축 ○ 노후 기자재 수리 및 정비비 ○ 학내전산망 및 DB서버 구축 ○ 학내전산망 유지보수 ○ 학교홈페이지 관리 ○ ICT 활용한 스마트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03]ICT 활용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활용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ICT 활용교육경진대회 및 연구대회 ○ 학생컴퓨터활용인증제, 정보올림피아드 운영, 사이버마을공부방 ○ 이러닝 박람회 및 이러닝 고도화 지원 ○ IPTV 활용교육서비스 지원 ○ 클라우드 기반조성 스마트교육 지원 등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17]	특별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중 특별활동지원 제반 경비 	
			[01]	문화예술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종합학예대회 및 발표회 ○ 관현악단 및 국악연주단 운영학교 지원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박람회 운영 ○ 각종 현장체험학습(도시체험활동 등) 운영 ○ 학생동아리 지원 ○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03]	각종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스포츠클럽,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 ○ 각종 체육동호회 지원 ○ 생활체육 관련 지원 제 경비 ○ 체육선수 육성 지원, 체육특기자 선발 ○ 전문 체육코치 운영 ○ 특별종목 지원 ○ 연계 육성팀 창단 지원 ○ 신인발굴 및 전지훈련, 선수훈련용 버스 운영 ○ 전국, 시·도·군 단위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 	○
			[04]	학생단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 배양 과정 및 특성화 수련프로그램 등 학생수련활동 운영 경비 ○ 야영장, 수련장, 학생교육원 등의 학생교육 지원 경비 ○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 청소년 선도, 학생봉사 자치활동 지도 등 청소년 활동 관련 제반 경비 	○
			[19]	학생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 제반 경비 ○ 학생흡연 예방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 ○ 학생안전교육 제반 경비 	
			[01]	학생생활지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도 등 학생생활 지도경비 ○ 흡연예방교실 운영 ○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관련 제반 경비 ○ 생활지도 관련 각종 연수 및 협의회, 대회 운영 등 제반 경비 ○ 학생표창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 관련 제 경비 	
			[02]	성폭력예방교육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제 경비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 운영 관련 제 경비 	
			[03]	학교폭력예방및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관련 제 경비 ○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서비스 지원 ○ CCTV설치, 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
			[04]	학생상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e센터 운영 ○ Wee클래스 운영 ○ 학부모자원봉사자 운영 ○ 전문상담기관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 	

분야	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5]학생안전관리	○ 학생안전교육, 학교안전정책 운영 및 평가 ○ 학생보호인력지원 ○ 학교안전공제회비 ○ 안전사고예방지도, 교통안전시설설치, 안전체험 시설운영, 스쿨존관리 등 학생안전관련 제 경비	
				[20]대안교육	○ 대안교육 운영 및 위탁 경비	
				[01]대안교육운영	○ 대안교육 운영 및 위탁교육비 지원 ○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 학교박청소년 복교 지원 관련 제 경비	
				[22]진로진학교육	○ 학생진로교육 등 진로진학교육 제반 경비	
				[01]진로진학교육운영	○ 초중고학생 진로연계교육 관련 제 경비 ○ 진로지도 자료 개발, 연수 등 진로지도 교육과정 운영 관련 제 경비 ○ 진로상담실 운영 ○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	○
				[25]학생선발배정	○ 수학능력시험 및 입시관리 등 학생선발배정 경비	
				[01]진학시험및입학전형 관리	○ 중학교 무시험 진학 관련 제반 경비 ○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제반 경비 ○ 학생 전·편입학 및 재입학 관리 업무 경비	
				[02]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 대학수능모의평가관리	
				[03]교육복지		
				[01]학비지원	○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등 경비	
				[01]교육비지원	○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대상 외 재학(원)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 지원 ○ 기타 교육비 지원	
				[04] 교육급여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	
				[02]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 지원 제반 경비	
				[01]방과후학교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제 경비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03]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경비	
				[04]돌봄교실운영	○ 돌봄교실운영 지원	○
				[05]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 농어촌 우수교 육성 등 교육여건 개선 제반 경비	
				[01]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 농어촌우수교 육성 지원 사업 ○ 농어촌 전원학교(돌봄학교 포함) 및 작은학교 육성 사업 ○ 농어촌 적정규모학교 육성 교육여건개선 경비 ○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지원 ○ 소규모학교군 구성 운영 등	
				[02]기숙형학교운영	○ 기숙형학교 교육여건개선 경비 ○ 기숙형학교 기숙사 운영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09] 교육복지지원		○ 정보화, 교과서 등 각종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		
			[01] 교육복지우선지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경비	○	
			[02] 급식비지원		○ 저소득층가정자녀 중식비 지원 등 학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금 ○ 저소득층가정자녀 학기중 중식지원비 지원 ○ 특수학생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가정자녀 학기중 토·공휴일 지원 등		
			[03] 정보화지원		○ 저소득층가정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 사이트 차단경비 포함) ○ 저소득층가정자녀 PC지원 ○ 저소득층가정자녀 IT교육 참가학생 경비 지원		
			[04] 누리과정지원		○ 3~5세 누리과정 지원 경비(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반비 등) ○ 3~5세 누리과정 업무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		
			[05] 교과서지원		○ 의무교육대상자(초·중·특수) 교과서 지급 경비 ○ 무상교육 고등학생 교과서 지원비 ○ 특수교육대상자(유치원, 고등학부 과정) 교과서 지원비 ○ 초등학교 영어 교과용 도서 구입 ○ 재량활동운영 교재 보급		
			[06]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 등자녀교육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등 특별반 운영 지원 경비 ○ 북한이탈학생지원 관련 운영 경비		
			[07] 기타교육복지지원		○ 기타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		
			[04] 보건급식				
			[01] 보건관리		○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 제반 경비 ○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원 경비		
			[01] 학교보건관리		○ 체질검사 및 각종 건강검진 경비 ○ 학생 성인병 정밀 검사비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학교보건교육자료 개발, 보건교사 연수 ○ 학교보건실 현대화 및 시설여건개선 관련 제 경비		
			[02] 학교환경위생관리		○ 교육환경보호활동 지원 등 학교교육환경보호 관련 경비 ○ 학교환경위생 연수 ○ 먹는물 시설 개선 지원 ○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 미세먼지 관리		
			[03] 산업안전보건관리		○ 산업안전 보건체제 운영 ○ 산업안전 보건 교육 운영 ○ 근로자 건강관리 운영 제 경비		
			[02] 급식관리		○ 급식시설 개선, 기구 구입 등 급식관리 제반 경비		
			[01] 학교급식운영		○ 학교급식위생 지원 및 교육 경비 ○ 학교급식관련 자료 발간 ○ 학교급식관련 지도 및 점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담당자 협의회 운영 ○ 학교급식 식품비, 운영비 및 관리비(무상급식비 포함) ○ 학교급식 운영차량 지원 및 관리비 	
				[03]학교급식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 	
				[05]학교재정지원관리		
				[01]학교운영비지원	○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등 제반 경비	
				[01]학교운영비지원	○ 공립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	
				[02]사학재정지원	○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경비	
				[01]인건비재정결함지원	○ 사학기관의 인건비 부족분 지원(맞춤형복지비 포함)	
				[02]운영비재정결함지원	○ 사학기관의 운영비 부족분 지원	
				[06]학교시설여건개선		
				[01]학생배치시설	○ 학교신설 등 학생배치시설 확충 경비	
				[01]학교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 대안학교)의 신축 및 이전 경비 ○ 학급증설학교(유·초·중·고·특, 대안학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 학교신증설 관련 자산취득비 	
				[02]학교시설개선	○ 학교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01]학교시설확충	○ 학생배치시설 이외 학교시설 증축 및 개축 관련 제 경비(부지매입비 및 자산취득비 포함)	
				[02]학교시설환경개선	○ 학교시설 증축 및 개축을 제외한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제 경비(자산취득비 포함)	○
				[053]평생교육		
				[01]평생교육		
				[01]평생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경비 ○ 방송통신중고 및 검정고시 운영 경비 	
				[01]평생교육시설및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학원 및 교습소 관리 ○ 공익법인 관리 ○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 	
				[02]평생학습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관 운영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 ○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 교육아카데미 및 평생교육강좌 운영 ○ 평생학습도시 지원, 평생학습 축제 지원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지원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및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03]방송통신중고운영	○ 방송통신중고 운영 경비	
				[04]검정고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경비 ○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 검정고시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
			[02]독서문화		○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 제반 경비	
			[01]도서관운영		○ 도서관 자료확충, 도서관 전산화 추진 ○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지원팀 순회운영 ○ 도서관 세미나, 야간개관 연장 운영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054]교육일반						
[01]교육행정일반						
			[01]정책기획및비상계획		○ 주요업무계획추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 제반 경비 ○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제반 경비	
			[01]교육정책기획관리		○ 주요업무 기획 및 보고 경비 ○ 공약사업관리, 교육감협의회 운영 ○ 각종 기획관련 자료 발간 ○ 교육정책 업무 추진 경비 ○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교육정책지원단 운영	
			[03]교육정책홍보		○ 교육시책 홍보활동 경비 ○ 공보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 교육관련 사진 촬영 및 관리 ○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교육홍보영상제작 등 경비	
			[04]비상대비계획운영		○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 직장민방위대 활동 및 운영 지원경비 ○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 사회복지요원 운영(전산 및 특수교육 지원 사회복지요원은 해당사업에 편성)	
			[03]감사법무관리		○ 자체 감사활동지원 등 감사관리 제 경비 ○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 제 경비	
			[01]감사관리		○ 자체감사활동 및 산하기관 감사 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국정감사 수감 관련 경비 ○ 행정사무감사 수감 관련 경비 ○ 반부패청렴추진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공직자재산등록 운영	
			[02]법무관리		○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 ○ 법제 심의 및 각종 위원회 운영 경비 ○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 제반 경비 ○ 각종 배상금, 승소 포상금 및 사례금 ○ 고문 변호사 운영 ○ 교직원 법률상담 운영	
			[04]기관평가및조직관리		○ 기관 및 학교 평가 제반 경비 ○ 혁신종합계획 추진 등 교육행정혁신 제반 경비	
			[01]기관및학교평가관리		○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경비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평가 관련 경비 ○ 학교 평가 관련 경비 ○ 평가결과 지원금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02]조직및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및 산하기관 조직관리,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직무성과계약제 관련 제 경비 ○ 목표관리제 운영, 분권이양업무 추진 	
				[03]행정개선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제반경비 ○ 행정권한위임, 교원업무경감, 제안제도 등 행정 운영 개선을 위한 제반 경비 ○ 교육행정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경비 	
				[07]의회협력및선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협력 지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 제반 경비 	
				[01]의회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협력 지원 관련 제반 경비 	
				[02]선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경비 	
				[09]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 제반 경비 ○ 교육통계연보 등 행정자료 관리 제반 경비 ○ 민원실운영 등 민원행정서비스 제반 경비 	
				[01]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에듀파인 등) 구축 및 관리 ○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관리 ○ 전산실 운영 경비 ○ 행정(교육)전산망 구축 및 운영비 ○ 공무원 외 전산업무 지원 위한 사회복지무원 등 ○ PC정비소 운영 경비 	
				[02]정보보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정보보호교육 및 운영관리 ○ 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 	
				[03]교육행정기록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 운영 ○ 기록물 관리 운영,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 교육통계연보 발간 관련 제반 경비 ○ 교육행정자료 발간에 소요되는 제 경비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 정보공시제 운영 	
				[04]민원행정서비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서비스 업무 추진 ○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제반 경비 ○ 민원만족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포상 ○ 행정서비스 현장 제도 ○ 민원실 운영 경비 	
				[13]예결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등 예결산관리 제반 경비 	
				[01]예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배정, 자료 조사, 예산서 인쇄 등 예산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 경비 ○ 재정 투자사업 심사 관련 경비 ○ 학교회계 업무 추진 관련 제반 경비 	
				[02]결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관리에 소요되는 제 경비 	
				[14]재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관리 등 재무관리 제반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01]재무회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업무 지원, 계약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업무 추진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 각종 회계업무 추진 경비 	
				[02]공유재산및물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 재산 등기, 측량, 감정수수료 등 공유재산관리 경비 ○ 재산취득·매각 관리, 각 부서 자산취득 경비 ○ 물품수급관리 등 제 경비 	
			[15]학생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배치계획 추진 관련 제반 경비 ※시설비 및 학교신증설 자산취득비는 학생배치 시설에 편성 	
				[01]학생배치계획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배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개발지구 학교신설 추진 경비 ○ 통학구역 관리 	
				[02]적정규모학교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이전 및 분교장 개편 업무 추진 ○ 학교 통·폐합 추진 경비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16]사학기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 경영평가 등 사학기관지도 육성 제반 경비 	
				[01]사학기관지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지도·감독 경비 ○ 사학직원 연수 경비 ○ 사학기관 행정지도 및 시설지원사업 지도 감독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17]교육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국제교류 등 교육협력 사업비 	
				[01]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제반 경비 ○ 학교발전기금 및 기부금품 지도·감독 경비 ○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활동 경비 지원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관련 제반 경비 	○
				[02]교육협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 및 유관기관 교육협력 제반 경비 ○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등 제 경비 	
				[03]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 PC지원 및 초청 연수 등 ○ 국외단체와의 자매결연 경비 ○ 교육교류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18]시설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 등 시설사업관리 제반 경비 	
				[01]시설사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 시설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20]특별교육재정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01]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 ※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 사용 불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21]교직원단체관리		○ 교원·지방공무원·근로자 단체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01]교직원단체관리		○ 교원,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단체 관리에 필요한 경비 ○ 교직원 노사관계 교육관련 경비 ○ 교원, 공무원, 근로자 단체교섭 및 협약추진 경비	○
			[02]기관운영			
			[01]기본운영비		○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01]기관기본운영비		○ 본청 운영 관련 경비 ○ 교육지원청 운영 관련 경비(※ 교육지원청 소속 직속기관 포함) ○ 직속기관 운영 관련 경비	
			[02]교육행정기관시설		○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비	
			[01]기관시설유지관리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시설유지보수, 환경개선, 신설, 이전 및 증·개축비	
			[03]재무활동			
			[01]지방채상환및리스크		○ 지방채,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제반 경비	
			[01]지방채상환		○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02]민간투자사업상환		○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03]일시차입금관리		○ 일시차입금 이자	
			[04]내부거래지출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01]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02]기금전출금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03]예탁금		○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예탁하는 자금	
			[04]예수금원리금상환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가져온 자금의 원리금 상환	
			[160]예비비			
			[161]예비비			
			[01]예비비및기타			
			[01]예비비및기타		○ 예비비 및 기타	
			[01]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02]제지출금등		○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등	
			[03]내부유보금		○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900]기타						
[901]인건비						
[01]인건비						
[01]공무원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인건비 등 공무원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교원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기타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등의 인건비 ○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지방공무원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행정지원기관 소속 일반직, 별정직 등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인건비 ○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교육전문직원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02]근로자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제교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계약제교원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교사, 시간제강사 등 인건비 ○ 계약제 및 시간제 교원 인건비, 퇴직수당 등 ※ 인턴교사 등 사업성 경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계약제근로자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출산휴가 등 행정대체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장애인고용부담금 ○ 공공기관 근무 인턴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교육공무직원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등 포함) ※ 교육공무직원 대체 인건비 포함 ※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업성 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별표 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제5조제2항 관련)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100	인건비			
	110	인건비		
		110-01 보수	봉급	○ 봉급(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월액 포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봉급
			검임수당	○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의한 검임수당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대우공무원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수당
			창안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교원보전수당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1)	
			교직수당가산금2)	
			교직수당가산금3)	
			교직수당가산금4)	
			교직수당가산금5)	
			교직수당가산금6)	
			교직수당가산금7)	
			교직수당가산금8)	
			교직수당가산금9)	
			교직수당가산금10)	
			선박및함정근무수당	
			국제전문직위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모범공무원수당	
			봉급조정수당	
			명예퇴직수당	
			장려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	
			개방형직위등보전및전문 직위수당	
			직급보조비	○ 직급보조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1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부임(일용 근로자)
	110-04 공무직보수	공무직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건비
	110-05 계약직교원보수	계약직교원인건비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인건비,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200	물건비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물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수용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품구입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 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 (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품·소규모 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간행물 등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실·보건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공상치료비 등 ○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무형자산성 프로그램의 소유권 취득은 무형자산(440-01)목에 계상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각종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료 및 광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입찰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의자조작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경비는 210-02목에 계상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수입료 및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 자문료 - 속기료, 원고료, 번역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교육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위탁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 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공로연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해외연수비 -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의 배우자에 대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경비
		210-02 공공요금및제세	전화요금	○ 전화요금(전보료 포함)
			인터넷통신요금	○ 인터넷통신요금
			전기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 도시가스료
			기타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요금 ○ 철도화물운송요금 ○ 위성방송, 유선방송수수료 ○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공공요금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보험료(자동차, 화재보증, 교육시설재난 공제회비 등)
			자동차세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기타제세	○ 오물수거료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채당금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 및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ESCO)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건물임대 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 ○ 상기 항목 나열되지 않은 기타 제세
	210-03	피복비	피복비	○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비 ○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계경비
	210-04	급량비	급량비	○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비 ② 부식비 ③ 후식비(우유 및 음료 등) ④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③)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⑤ 1항에서부터 4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보관비 및 공고료) ⑥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계경비(연료비 등) ⑦ 주·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워크숍, 연찬회, 연수, 회의 등 행사성 경비는 230목에 계상)
	210-05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210-06	운영수당	위원회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 수당 - 법령, 조례 등에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 위원회 참석 시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지급 경비 ○ 심사수당 -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투자심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숙직비	○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 시험관리비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지급제외 - 출제 및 심사수당 등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강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자체교육 포함) 외래강사료(원고료 포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자체교육 포함) 외래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실비지급 경비 ※ 강의를 병행하는 강사원고료가 아닌 책자 제작 등의 속기·원고료는 일반수용비(210-01)에 편성
			기타운영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운영수당
	210-07	임차료	토지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임차료
			시설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임차료(일시 임차료 포함) ○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통학차량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차량임차료
			통학차량의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차량임차 포함
			기타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비, 물품, 사무기기, 집기, 교구·기자재 등 임차료 ○ 기타 자산 임차료
	210-08	연료비	냉난방기연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용 LPG 및 유류 ※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연료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에 계상
	210-09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건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 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구 유지비 ※ 동력장치, 중장비, 운반구 등의 가동을 위한 유류의 구입비는 차량 선박비(210-10)목에 계상 - 1년 미만의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1년 이상의 시설장비유지관리 용역은 용역사업비(210-13)목에 계상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420-03)목에 계상
	210-10	차량선박비	차량선박유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및 선박, 항공기의 유류대
			차량선박소규모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및 선박, 항공기의 소규모 수선비(운반 건설 기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시설비(420-03)목에 계상 ○ 차량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한 소모품비
	210-11	재료비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성기구비품비로 구분)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구입비
	210-12	교육운영비	교과서구입비	○ 교과서지원에 따른 학생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구입비
			기타교육운영비	○ 학교 및 산하기관을 위한 교재교구 수선 비용 등
	210-13	용역사업비	관리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개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 단체가 시행해야할 주요사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 위탁금(320-02)목으로 계상하고, 유지관리업무가 아닌 행사 등 일반 업무에 대한 대행 용역은 일반용역비에 계상
			일반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 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 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210-14	민자사업운영비	BTL운영비	○ BTL운영비
	210-15	기타일반수용비	기타일반수용비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경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220		여비	
	220-01	국내여비	공무원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및 조례에 의한 공무원 출장여비
			비공무원출장여비	○ 공무원이 아닌 자의 출장여비
			이전여비	○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220-02	국외여비	국외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의 해외 출장여비
	220-03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빈초청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 부대 경비는 업무추진비에 계상
	220-04	국외훈련여비	국외훈련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항공료, 체제비, 학자금 등
	220-05	국내훈련여비	국내훈련여비	○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위탁 교육 등) 국내훈련여비
	230		업무추진비	
	23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정원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가산금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230-02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사업추진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경비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 해외출장 지원경비, 대회출전각종 격려금 등 ○ 피해학생 학부모 격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외빈초청경비	○ 외빈초청여비 중 연회비/선물비/행사경비
			기타업무추진비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업무추진비
		240 복리후생비		
		240-01 교직원복리후생비	교원학술연구지원비	○ 교원 학술·연구모임 지원경비
			동호회지원비	○ 교직원 동호회 지원경비
			직원능력개발비	○ 교직원 능력 개발비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 교사 수당
			기타복리후생비	○ 교직원 기타 복리후생비
		240-02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맞춤형복지비(학교로 전출할 경우 620-07)
			사립맞춤형복지비	○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근로자 포함) 맞춤형복지비(학교로 전출할 경우 620-14)
			근로자맞춤형복지비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맞춤형복지비(학교로 전출할 경우 620-07)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담임수당지원	○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담임수당
			교직수당지원	○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교직수당
			기타수당지원	○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기타수당
		240-04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교원 연구비
		250 직무수행경비		
		250-02 직책급여무수행경비	직책급여무수행경비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50-03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	○ [별표 1] 5. 특정업무경비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50-04 기타직무수행경비	감사활동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경비
			관재활동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 규칙 및 지침 등으로 정한 관재활동비
		260 연구개발비		
		260-01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교육청 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경비 ○ 연구활동비 및 연구관리비
			전산개발비	○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감리비 포함)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80-01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각급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06) 및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620-13)목에 계상)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310-01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및학자금 민간인보상금 민간행사지원금 사회복지무요원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압비 등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장려금, 상금 및 보상금 ○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 치료비 ○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급량비(매식비 단가 적용) 및 교통 실비 ○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지급하는 대규모 행사의 단체적 일괄적 실비 보상적 경비로 단순출장, 출전과 구분 ○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는 지급 제외) ○ 병역법 제31조에 의한 사회복지무요원의 보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310-02 배상금등	배상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 하여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10-03 포상금등	포상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금 ○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 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등 업무관련 해외기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예산 성과금 ○ 기타 포상금 - 교육행정기관 주관 각종 교육 및 교육행정 성과의 제고를 위한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직원의 사기진작 등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의 경우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기관포상의 경우 포상계획 수립 시 포상금 집행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을 설정하여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집행을 지양)
	320	민간이전		
		320-01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620목에 편성)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320-02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금 - 교육청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 전액 회수하는 계 사업비 - 교육청의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320-14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보조에 편성
		320-03 공무원법정부담금	공무원법정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부담금(연금 등) -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05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퇴직금),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령에 의한 기타 경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06 보험료부담금	보험료부담금	○ 민간이 부담하는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보험료 지원비)
			학교안전공제회비	○ 학교안전공제회비
		320-07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 특정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경비 (환차손 포함)
		320-08 민간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320-09 기타민간융자금	단기민간융자금	○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부문에 대하여 1년 미만으로 빌려주는 자금
			장기민간융자금	○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부문에 대하여 1년 이상 빌려주는 자금
			학자대여금	○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
			단기임차보증금	○ 1년 미만에 회수할 임차 보증금
			장기임차 보증금	○ 1년 이후에 회수할 임차 보증금
		320-10 연금부담금	사망조위금	○ 교직원 본인 및 가족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 교직원 재난부조금
		320-11 학생및학생단체이전경비	청소년단체활동보조금	○ 아람단, 누리단 등 청소년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금
			학생치료비	○ 학생치료비
		320-12 공무원법정부담금	공무직법정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직에 대한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퇴직금)과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 건강보험부담금 - 고용보험료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13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직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운동부지도자 등) 대한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퇴직금)과 퇴직환급금 및 부상치료비 - 건강보험부담금 - 고용보험료 - 산업재해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30 자치단체등이전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 중 자본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금
		330-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대규모 수선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330-04 자치단체보육료보조	누리과정보육료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세~5세 어린이집 원아에게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육료 보조경비
		330-05 공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 (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330-06 공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 한국교육개발원 운영비 부담금(방송통신중 및 방송통신고)
		330-07 자치단체간 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하는 경비 ○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340 해외이전		
		340-01 해외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경비
		340-02 국제부담금	국제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350	출연금		
		350-01 출연금	출연금	○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교육청의 출연금
			기타출연금	○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기타 출연금
400	자본지출			
	410	토지매입비		
		410-01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 학교,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토지보상비	○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실업비 등)에 대한 보상비
			토지매입수수료	○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타토지비용	○ 토지 취득 후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등(정지비 제외)
	420	건설비		
		420-01 기본조사설계비	사전조사비용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기본설계비	○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420-02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 완료 후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설계에 착수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안됨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의를 해야함
		420-03 시설비	건물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물 시설비 (대규모수선유지비 포함)
			토목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토목 시설비
			전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전기 시설비
			정보통신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정보·통신 시설비
			소방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방 시설비
			기계설비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설비 시설비
			위생설비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위생설비 시설비
			건축물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물 시설비
			조경공사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조경공사 시설비
			선박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선박 시설비
			항공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공기 시설비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도장공사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장공사 시설비
			부지정지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부지정지 시설비
			자산철거비	○ 노후건물 철거 등 자산 철거비
			기타자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자산 시설비
		420-04 감리비	감리비	○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 기존자산의 가치 증대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420-05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용 1. 시설, 대수선,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가.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나.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다.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라.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의 수송비 및 수수료 마.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바.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사. 공사과정 발생한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 자산 증가를 조성하는 물품 구입 및 시설은 해당 비목에 편성 ※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 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음
		430 유형자산		
		430-01 취득비	건물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물 취득비
			건축물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물 취득비
			기계장치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장치 취득비
			입목죽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입목죽 취득비
			선박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선박 취득비
			항공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공기 취득비
			운반건설기계및차량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취득비
			전기통신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전기통신기기 취득비
			사무용기기및집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복사기 등 행정사무기기 및 집기 취득비
			기계요소및공작기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취득비
			산업기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산업기계 취득비
			의료및화학분석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취득비
			물리시험측정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리시험측정기기 취득비
			기타실험장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실험장비 취득비
			기타잡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잡기기 취득비
			도서취득비	○ 학교도서관 및 도서실, 기록관 등의 자본 형성적 도서 구입비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문화유산자산취득비	○ 박물관유물 유상 취득비
			예술품취득비	○ 박물관 유물이 아닌 예술품 취득비
			기타유형자산취득비	○ 위 항목에 나열되지 않은 자산 취득비
			교구용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기기 취득비
	440	무형자산		
		440-01 무형자산	특허권	○ 무형자산 취득비 -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법률상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법률상의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 영업권
			저작권	○ 저작권 취득비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컨텐츠 취득비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 취득비
			의장(디자인)권	○ 의장(디자인)권 취득비
			상표권	○ 상표권 취득비
			상호권	○ 상호권 취득비
			기타무형자산취득비	○ 기타무형자산 취득비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자본형성적 사업지원비(각급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06) 및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13)목에 계상)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510-01 차입금상환	유동성장기지방채	○ 유동성장기지방채 증권의 상환 ※ 유동성장기지방채는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 차입금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지방채를 말함
			장기지방채	○ 장기지방채 증권의 상환 ※ 장기지방채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지방채증권발행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말함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은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 차입금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금융기관차입금을 말함
			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장기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유동성대체하지 아니한 장기금융기관 차입금의 조기상환) ※ 장기금융차입금이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을 말함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의 상환 ※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은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 차입금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말함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의 상환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말함
			금융리스채무	○ 금융리스 채무 차입금 상환
	510-02	차입금이자	유동성장기지방채증권이자비용	○ 장기지방채 중 차년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채 증권의 이자비용
			장기지방채증권이자비용	○ 지방채 증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이자비용	○ 유동성 장기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
			장기금융기관차입금이자비용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자비용	○ 유동성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비용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자비용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비용
			금융리스채무이자비용	○ 금융리스채무 이자비용
			일시차입금이자비용	○ 지방회계법 제24조에 의거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510-03	민자사업지급금	BTL원금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보상
			BTL이자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
600	전출금등			
	610	전출금등		
		610-01	일반회계전출금	○ 일반자치단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자금
		610-02	기타특별회계전출금	○ 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금
	620	학교회계전출금		
		620-01	인건비지원	○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교원 대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경비
			공무직인건비지원	○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 경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지원	○ 공립학교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
		620-02	학교운영비	○ 각급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620-03	목적사업비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교원 대체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인건비 제외]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중 각급학교에서 직접집행 가능한 경비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공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620-07 공립맞춤형복지비	공립맞춤형복지비	○ 공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620-08 인건비재정결합보조	인건비재정결합보조	○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 결합보조금(교원명예퇴직수당 포함)
		620-09 운영비재정결합보조	운영비재정결합보조	○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결합보조금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사립학교목적사업비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사립학교시설지원	○ 시설사업비, 기자재구입비 등 기타사업에 소요되는 자본 형성적 경비 계상 ○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620-13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 사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620-14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누리과정학비지원	○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세~5세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지원하는 학비
		620-16 사립학교근 로자인건비지원	사립학교계약제교원인건비 지원	○ 인건비재정결합보조금을 제외한 사립학교 전임강사,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 경비
			사립학교공무직인건비지원	○ 인건비재정결합보조금을 제외한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사립학교의 상용근로자(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지원 경비
			사립학교기간제근로자 인건비지원	○ 인건비재정결합보조금을 제외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사립학교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
700	예비비및기타			
	710	예비비및기타		
		710-01 예비비	일반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예비비(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예비비 (예비비 편성한도는 없음)
		710-02 반환금및기타	국고보조금반환	○ 교육청이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 미정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광역자치단체보조금 반환액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기초자치단체보조금 반환액
			기타반환금	○ 기타 반환금
		710-03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	○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710-04 예치금	예치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800 내부거래				
	81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10-0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820	기금전출금		
		820-01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830	예탁금		
		830-01 예탁금	예탁금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의 예탁금
	840	예수금원리금 상환		
		840-01 예수금원금 상환	예수금원금 상환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의 예수금 원금
		840-02 예수금이자 상환	예수금이자 상환	○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원가통계목명을 추가, 삭제할 수 있다.

1. 예산 편제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 I. 예산총칙
- II. 세입·세출예산
 - 1.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가.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 나.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기능별)
 - 다.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조직별)
 - 라.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 2.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 3.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 III. 계속비사업 조서
- IV. 채무부담행위 조서
- V. 명시이월사업 조서

제2권. 첨부서류

- 1.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 1) 지방교육재정 현황
-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 가. 재정자주도
 - 나.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 3) 부채
 - 가. 부채 총괄
 - 나. 통합부채의 내역
 - 다. 우발부채의 내역
 - 다-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다-2. 채무부담행위
- 다-3.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다-4. 소송사건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가.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비중

나. 의무지출 내역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사항 및 인센티브 현황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가-1. 지방채 발행사업 총괄

가-2.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나. 민간투자사업 현황

나-1. 민간투자사업 총괄

나-2.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6. 성인지 예산서
7. 성과계획서
8.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9. 명시이월 명세서
10.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11. 공유재산 관련서류
12.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14.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15.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17.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18.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19.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2. 예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산의 절사와 절상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예산의 단위
 - 세입·세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함
- 계량단위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3. 예산서 서식

- 1-1. 표지 및 예산총칙
- 1-2.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 1-3.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 1-4.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 1-5.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 1-6.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 1-7.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 1-8. 계속비사업 조서
- 1-9. 채무부담행위 조서
- 1-10. 명시이월사업 조서
- 1-11. 지방채 조서
- 1-12.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 1-13.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 1-14. 성인지 예산서

(서식 1-1)

○○년도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 시·(도)교육청

예산총칙(예시)

제1조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천원으로 한다.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2조 ○○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3조 ○○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6조 ○○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 상호간의 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2. 기간제근로자, 교육공무직 및 계약직교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신설비

제9조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서식 1-2)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회계연도:

예산구분: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		%
	기타이전수입		%		%		%
	소계		%		%		%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		%		%
	행정활동수입		%		%		%
	자산수입		%		%		%
	이자수입		%		%		%
	금융자산회수		%		%		%
	기타수입		%		%		%
	소계		%		%		%
차입	지방채		%		%		%
	소계		%		%		%
기타	전년도이월금		%		%		%
	예치금회수		%		%		%
	소계		%		%		%
내부거래	전입금		%		%		%
	소계		%		%		%

(서식 1-3)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회계연도:

예산구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다. 교육복지		%		%		%
라. 보건급식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		%		%
2. 평생교육		%		%		%
가. 평생교육		%		%		%
3. 교육일반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나. 기관운영		%		%		%
다. 재무활동		%		%		%
4. 예비비		%		%		%
가. 예비비및기타		%		%		%
5. 인건비		%		%		%
가. 인건비		%		%		%

(서식 1-4)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회계연도:

예산구분:

(단위: 천원)

기관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본 청			%		%		%
	공보담당관실		%		%		%
	○○담당관실		%		%		%
	○○국 ○○과		%		%		%
	○○국 ○○과		%		%		%
	○○국 ○○과		%		%		%
직속기관			%		%		%
	○○○연수원		%		%		%
	○○○도서관		%		%		%
교육지원청			%		%		%
	○○교육지원청		%		%		%
	○○교육지원청		%		%		%

(서식 1-5)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회계연도:

예산구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		%		%
100 인건비			%		%		%
	110 인건비		%		%		%
200 물건비			%		%		%
	210 운영비		%		%		%
	220 여비		%		%		%
	230 업무추진비		%		%		%
	240 복리후생비		%		%		%
	250 직무수행경비		%		%		%
	260 연구개발비		%		%		%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		%
300 이전지출			%		%		%
	310 보전금		%		%		%
	320 민간이전		%		%		%
	330 자치단체등이전		%		%		%
	340 해외이전		%		%		%
	350 출연금		%		%		%
400 자본지출			%		%		%
	410 토지매입비		%		%		%
	420 건설비		%		%		%
	430 유형자산		%		%		%
	440 무형자산		%		%		%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		%
500 상환지출			%		%		%
	510 상환지출		%		%		%
600 전출금등			%		%		%
	610 전출금등		%		%		%
	620 학교회계전출금		%		%		%
700 예비비및기타			%		%		%
	710 예비비및기타		%		%		%
800 내부거래			%		%		%
	81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		%
	820 기금전출금		%		%		%

(서식 1-6)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장	이전수입
---	------

10000

(예산구분) ○○년 본예산

예산액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관	항 목				
합계					%
중앙정부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중액교부금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특별회계전입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
	지방교육세전입금				%
	담배소비세전입금				%
	시도세전입금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
	교육급여보조금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
	비법정이전수입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국고지원전입금				%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
기타이전수입					%
	민간이전수입				%
	기부금				%
	기타지원금				%
	자치단체간이전수입				%
	전입금				%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	-----------------

11000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이전수입

예산액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항	목				
합 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증액교부금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특별회계전입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11100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이전수입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	---------	--------------

예산액

(단위: 천원)

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증액교부금				%

목	보통교부금
----------	--------------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 이전수입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 보통교부금	(소관)

예산액

(단위: 천원)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

(장)이전수입 (관)중앙정부이전수입 (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보통교부금 (단위: 천원)

사업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금액		

※ 장·관·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 예산서 상에 표시되는 산출기초의 출력여부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선택 가능

(서식 1-7)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	--------

051 - 01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분야) 교육	(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
-----------------	---------	---------------

단위사업 내역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교직원역량강화				%
교직원인사				%
교직원복지				%

경비성질별 내역

(단위: 천원)

성질별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본지출				%
상환지출				%
전출금등				%
예비비및기타				%
내부거래				%

단위사업	교직원역량강화
------	---------

01 - 03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	---------------	---------------

□ 세부사업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소관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교원연수운영	계				%
	○○과				%
지방공무원연수운영	계				%
	○○과				%
근로자연수운영	계				%
	○○과				%

세부사업	교원연수운영
-------------	---------------

01 - 03 - 01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기능) 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 ○○과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교직원역량강화	

예산액 및 재원

(단위: 천원)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

재원내역					
일반재원	국고보조금				

(정책)인적자원운용 (단위)교직원역량강화 (세부)교원연수운영

(단위: 천원)

사업내역	목	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금액		

※ 예산서 상에 표시되는 산출기초의 출력여부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선택 가능

(서식 1-8) 계속비사업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단위: 천원)

기관 (부서)명	과목			사업명	사업비 총액	전전년도 이전			전 년 도			계 획 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당해 년도	○○ 년도	○○ 년도	

(서식 1-9) 채무부담행위 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천원)

과 목			사업명	채무부담 행 위 액	상 환 계 획				사 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년	○○년	○○년	○○년	

(서식 1-10) 명시이월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단위: 천원)

기관 (부서)명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명시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서식 1-11) 지방채 조서

지방채 조서

(단위: 천원)

구분	기 간		이 율	기 채 선	기 채 액 (A)	기 상 환 액 (B)	전 년 도 상 환						당해연도상환			금 후 상 환 계 획 액 (E)	기 채 사 유
	기 채 년 도	상 환 완 료 예 정 년 도					상 환 계 획			상 환 액			계 획 액				
							원 금	이 자	계	원 금 (C)	이 자	계	원 금 (D)	이 자	계		

- 구분: 금융기관채, 지방채증권, 기타 차입금, 국외차입금 등
- 기채액(A)=기상환액(B)+전년도 상환액(C)+당해연도 상환계획액(D)+금후 상환계획액(E)

(서식 1-12)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 천원)

과 목			사업명	총사업비	상환기간		기상환액	상환 예정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시작	완료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이후	

- 총사업비: BTL 임대료를 말하며, 운영비는 제외
- Y년: 당해연도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1. 지방교육재정 현황

- 당해연도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표시

2. 교육부령이 정하는 재정지표

가. 재정자주도

(단위: 백만원, %)

구 분	Y년	Y-1년	증감
재정자주도 $((B+C+D)/A \times 100)$			
세입예산총액(A)			
지방교육재정교부금(B)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C) (목적성경비 제외)			
자체수입(D)			

【작성기준】

-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 세입예산총액: 본예산액 기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11101), 특별교부금(11102), 증액교부금(11103)
-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세입 목 지방교육세전입금(12101), 담배소비세전입금(12102), 시도세전입금(12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12105), 단, 목적성경비 제외
 - ※ 목적성 경비 제외 내역: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12104), 교육급여보조금(12106), 무상교육경비전입금(12107)
- 자체수입: 자체수입(20000) (단, 학교회계전출금지년연도수입(27302)은 제외), 기타이전수입(16000)

나.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Y년(A)	비율		Y-1년(B)	비율		증감 (C=A-B)	비율(C/B)
세출예산총액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작성기준】

-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 세출예산총액: 본예산액 기준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경비 + 기본경비
 - 인력운영경비: 아래의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
 -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 단위사업내 인건비(110), 직급보조비(25001),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32005), 공무원직법정부담금(32012),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32013), 인건비지원(62001)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 내 인건비재정결함보조(62008),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62016)
 - 모든 단위사업의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24003), 교원연구비(24004)
 - 기본경비: 아래의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
 -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 내 맞춤형복지비(24002), 특정업무경비(25003), 공립맞춤형복지비(62007),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 기본운영비 단위사업
 - 학교운영비지원 세부사업의 학교운영비(62002)
 -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의 운영비재정결함보조(62009)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의 맞춤형복지비(24002),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3. 부채

가. 부채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Y-2년 (가)	비율 (B/A)	Y-3년 (나)	비율 (B/A)	증감 (다=가-나)	비율 (다/나)
세입결산 총액(A)						
부채 계(B=C+D)						
통합부채(C)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우발부채(D)						
지급보증						
채무부담행위						
계약상 약정						
소송사건						

【작성기준】

- Y-2년은 전전년도, Y-3년은 Y-2년의 직전연도 결산기준
- 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의 유동부채(세외예수금)
- 장기차입부채: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 민자리스부채, 금융리스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한 부채로서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비용, 장기선수수익, 장기선수금, 장기세외예수금(임대보증금)
- 우발부채: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될 손실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부채로 진행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재정상태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반영

나. 통합부채의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내 역	금 액	비 고
통합부채 계(D=A+B+C)			
유동부채(A)			
장기차입부채(B)			
기타비유동부채(C)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 과목: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계정과목 3레벨 수준(예: 미지급금, 선수금)

다. 우발부채의 내역

다-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연번	발생연도	행위명(행위내용)	제공받은자	보증채무액	부채계상액	채권자
계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다-2. 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연번	발생연도	행위명(행위내용)	제공받은자	채무부담 행위금액	부채계상액
계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다-3.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백만원)

연번	발생연도	행위명(약정내용)	계약상대자	약정금액	부채계상액
계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등의 약정내용이 있는 경우에 반영

다-4. 소송사건

(단위: 백만원)

유형	건수	소송가액	소송중당 부채계상금액	비고
계				

【작성기준】

-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 유형: 처분취소, 손해배상, 지위확인, 반환청구, 대금청구, 소유권이전등기, 기타소송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가.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	Y년(A)	비중	Y-1년(B)	비중	증감	
					(C=A-B)	비율(C/B)
세출총액						
의무지출						
재량지출						

【작성기준】

-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본예산액 기준
- 의무지출: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 재량지출: 의무지출 외의 지출

나. 의무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금액	관련 근거	비고
합계			
△△△사업			
○○○사업			
...			

【작성기준】

- 당해연도 본예산액 기준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목(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작성기준】

- 전년도 10.1부터 당해연도 9.30까지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교육부 등 중앙부처
-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평가분야와 성적	교부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 지출	재해대책비 목적외 사용	△1,000
증액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년 상반기 예산집행 우수교육청 선정	10,000

【작성기준】

- 전년도 10.1부터 당해연도 9.30까지 확정된 교부금 대상
- 감액: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거나 의무지출을 게을리 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별표3] 측정항목 7(재정집행 효율화 지원)에 의한 교부금이 감액된 경우 등 보통교부금 산정 교부시 감액된 내용으로 작성(보통교부금 확정교부자료 참고)
- 증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별표3] 측정항목 7(재정집행 효율화 지원)에 의한 교부금이 증액된 경우(보통교부금 확정교부자료 참고)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매년 10월경(예산안 제출 전) 공문으로 통보하는 결과 서식 첨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가-1. 지방채 발행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지방채		특별 교부금	국고 보조금	지방 보조금	자체 재원	
		교부금 부담	자체 부담					

【작성기준】

- 작성일 현재기준, 원금만 작성
- 교부금부담: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 자체부담: 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지방채
- 총사업비 = 지방채+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자체재원
-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의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재원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예정액을 필히 기재

가-2.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학교신설사업: 학교별(○○초)로 작성
 - 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별(예 : ○○초 외 10개교 창호교체사업)로 작성

※ 작성서식 예시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및 필요성 ○										
<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 ○ 기 간: ○ 위 치: ○ 규 모:										
<input type="checkbox"/>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백만원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백만원)</div>										
		구 분		계		집 행 액		향후 소요액		
						Y-2년도까지	Y-1년도	Y년도	Y+1년도 이후	
계										
지방채	교부금부담									
	자체부담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 집행액: 지방채 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 발행예정액 포함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 ○										
<input type="checkbox"/>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서식 1-14) 성인지 예산서

가. 표지

○○년도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 시·(도)교육청

나.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서 개요 >

1. 성인지 예산의 의의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년 성인지 예산은 각 기관별로 작성한 성인지 예산을 취합·보완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임

2. ‘○○년 성인지 예산 개요

- ‘○○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개 기관의 ○○개 사업이며,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는 ○○○천원 수준임

구분	대상사업	비고
필수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¹⁾ 에 포함된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성별영향평가 사업 ²⁾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
	○ 매년 교육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에 포함 통보
선택	○ 시·도교육청이 자체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교육감 공약사업 등

- ‘○○년 성인지 예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시·교육청별 특성에 맞게 수록)
 - ‘○○년 성별영향평가 중점과제인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업을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 ‘○○년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총 3개 과제 중 1개 과제를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기반 마련
 -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둠

3.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첨부서류)

다. 성인지 예산 총괄표

I. 성 평등 목표

○

II. ○○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

III.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분야별 규모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개				%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개				%
2. 성별영향평가사업*	개				%
3. 교육부지정사업	개				%
4. 자체선정사업**	개				%

*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		%
1-1.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		%
...						%		%		%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		%
2-1.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		%		%
...						%		%		%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		%
3-1.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		%		%
...						%		%		%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		%
4-1.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		%
...						%		%		%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		%
5-1.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		%		%
...						%		%		%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		%
6-1.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		%		%
...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선정사업

- 1)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5~'17)이 종료되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책 과제 반영
- 2)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8.03.27.개정 '18.09.28.시행)으로 명칭 변경(성별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평가)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다. 교육복지						%		%		%
라. 보건급식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		%		%
2. 평생교육						%		%		%
가. 평생교육						%		%		%
3. 교육일반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나. 기관운영						%		%		%
다. 재무활동						%		%		%
4. 예비비						%		%		%
가. 예비비및기타						%		%		%
5. 인건비						%		%		%
가. 인건비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 기관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기관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본 청						%		%		%
						%		%		%
						%		%		%
						%		%		%
직 속 기 관						%		%		%
						%		%		%
						%		%		%
						%		%		%
교육지원청						%		%		%
						%		%		%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라. 정책과제별 성인지 사업 예산 현황

【정책분야 : 】

정책과제명

- 년도 성 평등 목표
- -

대상사업의 세부사업별 현황

(단위: 천원)

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	사업명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부문					%
정책사업1					%
단위사업1					%
세부사업1					%
사업1					%
사업2					%
세부사업2					%
사업1					%
					%
					%

기관별 성별수혜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②	증감 ③=①-②	증감률 ③/②
합 계				%
본 청				%
				%
				%
				%
				%
직 속 기 관				%
				%
				%
교육지원청				%
				%
				%

마. 기관별 성인지 예산서

기 관 명(○ ○실·과)

I. ○○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

II. 성인지 예산의 규모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개				%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개				%
2. 성별영향평가사업*	개				%
3. 교육부지정사업	개				%
4. 자체선정사업**	개				%

*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		%
1-1.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		%
...						%		%		%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		%
2-1.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		%		%
...						%		%		%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		%
3-1.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		%		%
...						%		%		%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		%
4-1.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		%
...						%		%		%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		%
5-1.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		%		%
...						%		%		%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		%
6-1.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		%		%
...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선정사업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천원)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다. 교육복지						%		%		%
라. 보전급식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		%		%
2. 평생교육						%		%		%
가. 평생교육						%		%		%
3. 교육일반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나. 기관운영						%		%		%
다. 재무활동						%		%		%
4. 예비비						%		%		%
가. 예비비및기타						%		%		%
5. 인건비						%		%		%
가. 인건비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 분			Y-3년도	Y-2년도	Y-1년도
합계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과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		명	명	명	

※ 통계출처 : 교육통계연보 자료 활용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동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 등으로 기재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

○ 예산 구분

(단위: 천원)

구 분		Y-3년 결산액	Y-2년 결산액	Y-1년 예산액
합 계	계			
	여성(비율) (D/B)	(%)	(%)	(%)
	남성(비율) (F/B)	(%)	(%)	(%)
○○과	계			
	여성(비율) (D/B)	(%)	(%)	(%)
	남성(비율) (F/B)	(%)	(%)	(%)
...	계			
	여성(비율) (D/B)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 성별 수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 여건,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달성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 분	Y-2년 실적	Y-1년 추정치	Y년 목표치
전 체			
○○과			
○○과			
...			

※ 부서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산출근거 :

성평등 기대효과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 분		Y-3년	Y-2년	Y-1년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명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수혜율(B/A)	%	%	%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명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수혜율(D/C)	%	%	%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명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수혜율(F/E)	%	%	%

※ 통계출처 : 교육통계연보 자료 활용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동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 등으로 기재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

○ 예산 구분

(단위: 천원)

구 분	Y-3년 결산액	Y-2년 결산액	Y-1년 예산액
계			
여성(비율) (D/B)	(%)	(%)	(%)
남성(비율) (F/B)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 여건,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Y-2년 실적	Y-1년 추정치	Y년 목표치

※ 부서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산출근거 :

성평등 기대효과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3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세세부사업 설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1인적자원운용				
03교직원역량강화				
01교원연수운영				
			01유치원교원연수지원	유치원교원연수여비, 연수부담금
			02초등교원연수지원	초등교원연수여비, 연수부담금
			03중등교원연수지원	중등교원연수여비, 연수부담금
			04특수교원연수지원	특수교원연수여비, 연수부담금
			05초등전문직연수지원	초등전문직연수여비, 연수부담금
			06중등전문직연수지원	중등전문직연수여비, 연수부담금
			07유치원교원역량강화	유치원교원 및 학부모연수비
			08특수교원역량강화	특수교원연수비, 특수교사수업연구발표대회, 특수교육우수사례연구대회 등
			09외국어교원연수	외국어교원연수
			10특성화고교원연수지원	특성화고교원연수지원, 영농학생우수교사 해외연수, 특성화학과장장기파견연수, 전문계고국제화교육비
			11체육교과교원연수운영	체육교사, 체육코치, 체육강사 연수비
			12통합연수지원	유·초·중등교원 각종 통합교육지원
			13교원연수운영지원	교원연수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14교원자격연수운영	교원자격연수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15교원직무연수운영	교원직무연수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16교원사이버연수운영	교원사이버연수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03지방공무원연수운영				
			01지방공무원교육훈련지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여비, 연수부담금 직원능력개발비, 교육행정위크숍 직장교육, 지방공무원연찬회 등
			02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지방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경비
			03지방공무원직무연수운영	지방공무원직무연수비
			04지방공무원사이버연수운영	지방공무원사이버연수경비
04근로자연수운영				
			01근로자연수운영	교육공무직원 연수운영경비, 연수및워크숍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5교직원인사		
		01교원인사관리		
			01교원임용시험관리	초중등신규교사임용시험관리비, 수석교사 등 선발시험관리비, 자격연수대상자 시험관리비, 기간제교사인력풀시험관리비(추가)
			02전문직임용시험관리	초중등전문직임용시험관리비
			03교원인사관리	초중등인사관리, 인사업무공청회비 등
			04교장초빙공모제운영	교장초빙공모제운영비
			05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비
			06교원행사관리	스승의날행사지원, 광주교육상운영, 퇴직교원훈포장전수 등
		03순회교사제운영		
			01순회교사제운영	순회교사제운영비
			02농촌지역순회교원수당	농촌지역순회교원수당
		04지방공무원인사관리		
			01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비
			02지방공무원인사관리지원	지방공무원인사관리비
		05근로자인사관리		
			01근로자업무관리	근로자(학교회계직포함) 인사·업무 관련 경비
			02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08교직원복지		
		01교직원복지지원		
			01사망조위금및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및재난부조금
			02학교안전공제회지원	학교안전공제회지원비
			03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저출산고령화사회 관련 경비
			04영유아보육수당	영유아보육수당
			05셋째아이상유치원학비지원	셋째아 이상 유치원 학비지원
			06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교직원예술제, 체육대회 등 지원비
			07교직원동호회활동지원	각종 동호회 운영 지원 경비
			08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09장애인공무원지원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비
			10교원복지대여	교원 무이자·저리 대여 이차보전경비, 교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1지방공무원복지대여	지방공무원 무이자·저리대여이차보전경비, 지방공무원대여학자금부담금
			12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운영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 운영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교수학습활동지원				
01교육과정운영				
01교육과정운영지원				
01교육과정편성운영				
02자율학교지정및운영지원				
03돌아오는도심학교운영				
04교육과정건설팅지원단운영				
05자유학기제운영				
06수준별이동수업내실화				
07창의인성교육지원				
08사교육비경감대책운영				
09사교육없는학교인턴교사지원				
10문화예술교육강사지원				
11원어민교사운영				
12영어회화전문강사지원				
13영어교육활동지원				
14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15영어체험캠프운영				
16영어교육활동경연대회운영				
17거점영어센터운영				
18영어친화적환경구축운영				
19제2외국어교육지원				
교육과정편성지침, 교육과정심의, 개정교육과정교원연수,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교과심의위원회운영,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지도,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경비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운영비지원				
교육과정건설팅지원단운영				
자유학기제운영				
수준별이동수업장학활동, 연수 및 홍보활동비 등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지원, 창의인성모델학교지원, 창의적발문 지도연수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 운영비				
인턴교사지원비				
예술교육과정 및 강사운영, 예술교육학습보조인턴교사 등 지원				
원어민보조교사지원, 해외원어민채용, 화상교사 워크숍				
영어회화전문강사 급여				
영어교육활동지원, 영어듣기능력평가비, 영어교사연수 등				
장학자료개발보급, 영어교사워크숍, 영어교육우수사례보고서 심사 등				
영어체험캠프운영				
영어수업개선연구대회, 고교생영어한마당, 영어글쓰기대회, 생활영어인증제, 영어논술대회 등				
거점영어센터프로그램운영비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비, 영어체험프로그램운영비, 영어전용교실구축운영비, 거점영어체험센터운영비, 전용교실우수사례공모전, 우수학교지원, 워크숍 등				
제2외국어 위탁교육운영, 제2외국어교육지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20과학교육장학활동지원	장학자료개발보급, 부장회의, 각종세미나, 관련단체지원 등
			21과학실험연수운영	과학실험연수운영
			22과학분야연수운영	과학과개정교육과정연수, 발명관련연수, 과학과특수분야연수
			23과학인턴교사지원	인턴교사인건비
			24과학교실운영	초,중과학교실, 상설과학실험교실, 학교로가는생활과학교실운영, 과학탐구교실 등 운영
			25광주과학문화축제운영	광주과학문화축제운영비
			26과학전람회운영	과학전람회대회운영비
			27학생발명품경진대회운영	학생발명품경진대회운영비
			28과학경시대회운영	대회 관련 경비
			29과학탐구대회운영	학생동아리발표대회 등 탐구대회 관련 경비
			30과학의달행사	대회 관련 경비
			31기후환경교육지원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경비
			32과학교육체험관운영	체험관 운영비·재료비, 프로그램개발비 관련 경비
			33생물학습자료지원센터운영	생물학습자료지원 관련 경비
			34천체관측회운영	천체관측실운영비
			35광주과학축전운영	광주과학축전운영비
			36융합교육활성화지원	융합교육사업추진
			37체육교과장학활동지원	장학자료개발보급, 체육연구논문심사 등
			38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등
			39중학교스포츠강사지원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등
			40학생건강체력평가	학생건강체력평가측정장비구입 등
			41초등학생수영체험학습지원	수영체험학습비
			42체육체험학습지원	체육체험학습지원 등
			43교과교실제운영내실화	운영학교 워크숍, 교과교실지정경비, 컨설팅비
			44고교학점제운영	고교학점제운영지원
			03교육자료개발보급	
			01인정도서심의	인정도서심의경비
			02창의적체험활동교재개발	입학초기적응활동교재개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3지역교과과정교과서개발보급	지역교과과정 교과서개발보급비	
			04보건교과서보급	보건교과서보급	
			05중등인정도서개발	중등인정도서개발지원	
		05특색교육과정운영			
			01평화통일교육운영	통일교재발간, 통일교육위크숍, 통일자문위원회운영, 통일교육 여비, 탈북학생지원	
			02역사교육강화	역사교육 관련 경비	
			03혁신학교운영지원	혁신학교운영비지원	
			04작은학교살리기	작은학교 살리기	
			05학교문화혁신	학교문화혁신운영	
			06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학교협동조합 운영 및 교육지원	
			07어린이놀이권리보장	관련 위원회, 프로그램운영 등 사업비	
		06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01과학교육여건개선	과학실험실현대화 및 과학관 구축·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02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체육장비 구축,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학교운동장 조성 포함)	
			03고교학점제운영여건개선	고교학점제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04교과교실운영여건개선	교과교실운영 시설 및 기자재구축 (운영비 제외)	
			05기타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기타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	
		02학력신장및평가			
		01교실수업개선			
			01질문이있는교실	수업개선, 수업나눔운동 등 수업혁신사업비	
		02학력향상지원			
			01기초기본학습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보충학습 경비, 두드림학교·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경비, 기초학력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학생 보충학습 경비 등	
			02행복한수학교육지원	행복한수학교육지원	
		03학력평가관리			
			01초등학생교과학습진단평가	자체진단평가	
			02중학생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중학생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03고등학생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생전국연합고사비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4내신성적관리및평가방법개선	내신성적관리및평가방법개선지원
			05학력향상중점학교운영지원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보정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우수학교 표창, 학력향상 중점학교 컨설팅 등
			06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지원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지원비
03장학및연구				
		01현장중심장학지원		
			01찾아가는장학컨설팅제운영	장학위원회운영, 중등교과별 장학위원회운영, 대학연계장학자문위원회 운영, 시민 장학자문위원회운영
			02초등장학활동지원	장학계획수립, 설명회, 장학지도, 고마우신 선생님제운영, 수업스타선생님연수
			03중등장학활동지원	장학계획설명회, 장학지도, 감동수업 우리 선생님, i-사랑 선생님 워크숍
			04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 수당, 시간감축 수당, 수석교사 멘토링제 운영, 운영비지원, 연찬회, 워크숍경비 등
		03연구시범학교운영		
			01연구시범학교운영	시범학교지정운영관련행정경비, 현장연구지원 컨설팅단운영
			02유치원시범학교지원	유치원시범학교지원비
			03초등교육시범학교지원	초등교육시범학교지원비
			04중등교육시범학교지원	중등교육시범학교지원비
		04교육연구운영지원		
			01교수학습자료개발	교수학습자료개발
			02교육정보화학술지발간	교육정보화학술지발간
			03광주교육자료관운영	자료관운영비
			04교과교육연구회운영지원	자생적연구동아리지원, 현장교육연구활동 지원, 광주교대-광주부설초공동연구지원, 초등교과아카데미활동지원, 교과교육연구회운영
		05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01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경비, 자료 제작 지원,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등
06유아교육				
		01유아교육운영		
			01유치원장학활동지원	※사립유치원 제외 모니터링, 교육과정 우수유치원선정, 장학위원수당, 유치원 운영계획설명회 등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유아교육과정운영지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자료개발비,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운영
			03종합컨설팅단운영지원	종합컨설팅단운영지원
			04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업	발달지원, 다문화유아지원
			05유초연계멘토운영	유초연계멘토운영비
			06유아교육각종대회운영지원	교재교구개발전시회, 동화구연대회 등
			07유치원평가	운영비, 보상금
			08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	유아교육체험영역 운영
			09유아교육지원	교재교구대여, 멀티미디어 제작, 도서관운영
			10교류체험지원	교류체험지원
		02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사립유치원 제외
		01돌봄유치원운영지원		돌봄유치원운영지원비
		02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03유치원교육여건개선		※사립유치원 제외
		01유치원교재교구확충지원		교재교구비, 교사도우미로봇활용교육
		02유치원환경개선지원		실내외종합놀이기구지원, 유치원CCTV설치, 유치원환경개선지원 (단설유치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편성)
		04사립유치원지원		
		01사립유치원교육역량제고		사립유치원교육역량제고
		02사립유치원운영비보조		사립유치원운영비보조
		03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
		04사립유치원유아교육과정운영지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편성운영, 교육자료 개발비,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등
		05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등
		06사립유치원교재교구확충지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등
		07사립유치원환경개선지원		사립유치원환경개선지원 등
		07특수교육		
		01특수교육운영		
		01특수교육장학활동지원		장학협의회운영, 특수교육운영위원회운영, 특수학급자율장학협의회운영비
		01특수교육과정운영지원		특수교육자료개발, 운영계획수립, 홍보리플릿, 특수학교 1인1약기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 교과서지원, 특수교육 실태조사, 통합교육활동 지원 등
		02특수학교종일반운영		특수학교종일반운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3특수교육각종대회운영지원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전국장애학생 직업경진대회, 장애인의날 행사비
			04특수학교(급)직업교육지원	직업교육비
			05방과후학교운영지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06특수교육센터운영	운영요원(사회복지사, 순회강사, 인턴교사등) 인건비, 운영물품, 여비, 업무추진비 등
			07특수교육대상자선정및배치	특수교육대상자심사, 평가, 심사위원회운영
			08장애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행사비
		03특수교육복지		
			01장애학생치료비지원	장애학생 치료비지원
			02특수학급학생통학지원	학생, 학부모통학비지원
			03특수교육보조원지원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 연수비, 사회복지무요원(장애학생활동지원)인건비 등
			04특수학교방과후교육지원	특수학교(급)방과후교육활동지원
		04특수교육여건개선		
			01특수교육여건개선	특수학교(급)환경개선지원
	08영재교육			
		01영재교육운영		
			01영재교육운영지원	영재판별도구개발, 장학자료개발, 영재교육진흥위원회운영
			02영재교원연수지원	영재교육담당교원연수, 워크숍비용
			03초등학생영재학급운영	초등학생영재학급운영
			04중학생영재학급운영	중학생영재학급운영
			05고등학생영재학급운영	고등학생영재학급운영
			06초등학생영재교육원운영	교재개발비, 영재교육대상자선발비, 지도교사수당
			07중학생영재교육원운영	일반 운영비, 교재 개발비, 영재교육대상자선발비, 지도교사수당, 외부강사수당 등
			08IT영재교육원운영	대상자선발비, 교재개발비, 프로그램구입 등
			09문화예술교육원운영	대상자선발비, 강사수당, 발표대회경비 등
			10광주과학영재학교운영	과학영재학교 운영을 위한 관련 경비
	09독서교육			
		01독서논술교육운영		
			01독서교육활성화지원	독서교육장학자료개발보급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독서교육관련대회운영	독서논술 경시대회, 독서 토론대회, 빛고을사이버독후감대회,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 운문산문쓰기대회, 양성평등 글짓기, 독서퀴즈대회, 국어사랑실천대회
			03토론논술교육활성화지원	토론논술교육활성화지원
			04e-NIE활용학교지원	e-NIE활용학교지원
		02학교도서관운영		
			01학교도서관리모델링지원	리모델링비, 환경개선비
			02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서연수비, 도서관활용수업방법일반교사연수, 학교도서관활용체험교실, 학교도서관축제,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운영연수
		12직업교육		
		01직업교육운영		
			01특성화고운영지원	특성화건설팅지원, 인정도서개발 등 ※ 특성화고 장학금은 '(세부)특성화고장학금 지원' 에 편성
			02특성화고해외인턴십지원	특성화고학생해외인턴십지원
			03특성화고교장학활동지원	장학자료 개발보급, 실무형실습 교재개발, 교수-학습연구대회운영, 직업교육유공교원 발표대회, 직업교육종합 실천발표대회
			04기능경기대회지원	훈련비, 출전경비
			05전국FFK전진대회지원	전국FFK전진대회지원비
			06기술가정경진대회지원	기술가정경진대회 운영비 등
			07기타행사지원	기능영재반육성지원, 전문계고교생사장되기 창업대회, 직업기초능력경진대회 등
			08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	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
			09특성화고개편지원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및 학과개편 기자재 확충비 지원
			10마이스터고교육과정운영지원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관련 경비
			11마이스터고교육환경지원	기숙사 비품비, 기타교육환경개선비 등
			12일반계 및 자율고교 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초중고 진로연계교육, 일반계고직업과정운영지원, 직업교육체험학습, 광주직업교육넷 운영 등
		04취업역량강화		
			01산학협력교육과정운영지원	산학협력교육과정운영, 광주직업교육발전위원회운영
			02시지원맞춤형취업약정사업	시지원맞춤형취업약정사업
			03산학협력취업지원센터운영	산학협력취업지원센터운영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4특성화고창업지원사업	전문계고 창업동아리지원비
			05특성화고학교기업지원	전문계고 학교기업지원비
			06특성화고취업지원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
			05직업교육환경개선	
			01직업교육환경개선	직업계고체제개편 지원 및 기자재 확충비 지원,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14학교정보화	
			01학교정보화여건개선	
			01학교정보화기기보급	증설학급컴퓨터보급, 증설학급프로젝션TV 보급, 증원교사노트북보급,노후정보화기기 보급
			02교육기자재수리정비	교육기자재 수리정비비
			03학교인터넷망고도화	IPTV설치비
			04학내전산망구축지원	신설및증설학교 학내전산망구축비
			05전산망유지보수비	전산망유지보수비
			03ICT활용교육지원	
			01건전한정보문화조성추진	빛고을넷사랑운동, 사이버실천대회운영비
			02정보역기능예방교육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저작권침해예방교육
			03학부모인터넷교실운영	학부모인터넷교실운영비
			04교실수업강화교원연수운영	ICT활용수업기본과정, 수업심화과정, 소양과정, 학교관리자 교육정보화리더십연수, 우수교원인턴십연수 등
			05원어민화상콜센터운영	운영비, 원어민화상수업지원 등
			06ICT활용수업연구교사제운영	자문단운영, 세미나 등
			07교육정보화경진대회운영	광주교육정보대상, ICT활용경진대회
			08광주교육포털시스템운영	광주교육포털시스템운영
			09디지털교과서활용지원	디지털교과서활용지원
			10소프트웨어교육지원	소프트웨어교육지원
			11ICT연계교육운영	맞춤형ICT교육운영
			12사이버가정학습빛고을샘운영	사이버가정교사수당, 연수비, 사이버 가정 학습콘텐츠개발비, 유지보수비, 사이버가정학습 홍보비 등
			13영상자료제작지원	학교인터넷방송 웹호스팅운영, 현장지원 영상자료제작, 학교방송지원, UCC 동영상 공모전
			14사이버가정학습e학습터운영	온라인 자기주도적 자율학습 콘텐츠, 유지보수비 등
			15IPTV활용교육서비스	IPTV활용교육서비스지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16스마트교육경비	클라우드 기반조성 등 스마트교육 관련 경비
			17SW교육장학활동지원	SW교육장학활동지원
		17특별활동지원		
		01문화예술교육활동		
			01문화예술교육장학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관련 교원연수비, 문화예술교육실천사례발표회, 학생종합예술제 유공교원실천사례발표, 장학자료개발비
			02문화예술특성화학교지원	특성화학교부서 선정비, 특성화학교지원, 특성화부서지원, 문화예술 자기표현활동지원, 소규모학교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협의회운영 등
			03문화교실구축및운영지원	문화교실구축비, 선도학교지원비
			04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학생동아리지원, 문화예술단체지원
			05문화예술동아리활동지원	고등학교문화예술동아리축제추진운영비
			06장학금지원	문화예술영재장학금
			07교직원예술제추진	교직원예술제추진
			08문화예술교육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연수 운영
			09광주학생예술누리터운영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운영비
		03각종체육활동		
			01팀창단비지원	초,중,고 팀창단비지원비
			02육성종목지원	장비비, 선수훈련비
			03꿈나무선수육성지원	꿈나무선발비, 훈련비
			04전국소년체전대표선수훈련비지원	장비비, 선수훈련비
			05전국체전대표선수훈련비지원	장비비, 선수훈련비, 동계체전포함
			06전국장아학생체전대표선수훈련비지원	장비비, 선수훈련비
			07체육코치인건비	체육코치인건비
			08체육특기자선발	체육특기자선발, 관련 위원회 운영 등
			09전국규모대회출전지원	전국규모대회출전지원
			10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지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지원, 즐거운학교만들기동아리클럽운영지원
			11각종체육대회지원	교육감배체육대회운영비, 각종대회 보조
			12전국체육대회출전지원	전국체육대회출전비
			13전국체육대회출전우수자지원	선수장학금, 지도자 입상포상금, 체험연수 등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14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출전지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출전지원			
			15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지원비			
			16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우수자지원	선수장학금, 지도자 입상포상금, 체험연수 등			
		04학생단체활동					
				01학생수련활동지원	학생수련활동지원		
				02학생수련요원인건비지원	수련지도사인건비, 근로자(조리원)인건비, 수련활동보조원 인건비		
				03학생수련시설관리및유지보수비	수련시설관리비, 수련시설유지보수비		
				04현장체험학습운영지원	현장체험학습운영지원		
				05리더십배양과정운영	훈련계획서, 운영물품비, 외래강사비, 차량비		
				06학생수련활동운영	훈련계획서, 운영물품비, 외래강사비, 차량비		
				07특성화수련프로그램운영	훈련계획서, 운영물품비, 외래강사비, 차량비		
				08창의적체험활동지원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연수 운영 등		
				09학생봉사활동지원	학생봉사활동지원		
		19학생생활지도					
				01학생생활지도지원			
					01인권교육운영	우수사례발간, 심사비, 인성인권교육비	
					02준법정신강화교육운영	기초질서지킴이우수교지원, 바른생활습관 길잡이자료개발보급, 교통안전교육비	
					03자랑스런광주학생상제운영	자랑스런광주학생상제운영	
					04애국애향정신계승운영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비,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지원비 등	
					05학생자치활동지원	학생의회설치운영	
					06민주시민교육운영	민주학교 운영, 교수학습자료개발, 연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관련 경비	
					07학생생활부장수업지원	학생생활부장수업지원, 선도학교운영	
				02성폭력예방교육등			
						01양성평등교육지원	양성평등 교육비, 양성평등 글짓기대회운영 등
		03학교폭력예방및교육					
				01학생생활지도관리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교외지도증인쇄, 각종회의비, 각종우수사례집발간, 교외지도여비, 학교폭력예방협의체운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생활지도교원연수지원	생활지도교원연찬회,교감연찬회, 폭력예방 집중연수, 전문상담교사연수, 학부모연수 등
			03초등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초등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04학교안전망구축	CCTV설치,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운영
			05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운영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운영비, 인건비
		04학생상담활동		
			01학교생활지원센터(Weecenter)운영	학교생활지원센터(Weecenter)운영비
			02Wee클래스운영	Wee클래스운영비 지원
			03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지원
			04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	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
			05주간보호형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운영	주간보호형학교폭력피해학생지원센터운영, 위탁기관 운영 및 지원비
		05학생안전관리		
			01학생안전교육	학생안전교육, 학교안전정책 운영및평가
			02학생보호인력지원	학생보호인력 지원
			03학교안전공제회비	학교안전공제회비
			04안전사고예방지도	안전사고예방지도
			05안전시설설치및운영	교통안전시설설치, 안전체험시설운영, 스쿨존관리 등
		20대안교육		
		01대안교육운영		
			01금란교실운영비지원	금란교실운영비지원
			02Wee스쿨운영비지원	Wee스쿨운영비지원
			03대안위탁교육기관운영	대안위탁교육기관운영
			04미취학및무단결석학생지원	미취학 및 무단결석학생지원
		22진로진학교육		
		01진로진학교육운영		
			01진학진로정보센터운영	진학진로정보센터운영
			02진로교육활성화	진로교육활성화
		25학생선발배정		
			01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1중학교무시험진학관리	중학교무시험진학관리
			02고교입시관리	전형요강인쇄, 각종심사수당, 업무보조원인건비,전산처리용역비 등
		02대학수학능력시험		
			01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03교육복지				
		01학비지원		
		01교육비지원		
			01교육비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024대교육비시스템운영비지원	4대교육비시스템운영비 지원
			03특성화고장학금지원	특성화고교생 장학금 지원
			04사립유치원신용카드수수료지원	사립유치원신용카드수수료지원
			05장애유아무상교육지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
		04교육급여지원		
			01교육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02방과후과정및돌봄교실				
		01방과후학교운영		
			01방과후학교사업지원	방과후학교전담인력인건비,방과후학교운영비
			02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운영비, 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비, 인건비등
			03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방과후학교 워크숍, 농촌지역방과후학교지원
			04대학생멘토링제운영	멘토선발 및 연수비, 멘토비 지원
			05엄마품멘토링운영	엄마품멘토링운영비
		03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01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경비
		04돌봄교실운영		
			01돌봄교실운영	보육강사수당, 운영비, 리모델링비, 프로그램 제작비
			02돌봄교실성평등교육지원	돌봄교실성평등교육지원 운영 등
05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01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01소규모학교학생지원	소규모학교학생지원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기숙형학교운영		
			01기숙형학교지원	기숙형학교지원비
	09교육복지지원			
	01교육복지우선지원			
		01교육복지추진지원		관계자 연수, 교육복지위원회 운영 등 교육복지지원사업 추진 경비
		02교육복지우선지역단체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민간단체지원비
		03희망교실운영지원		희망교실운영지원
		04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지원		장학금, 심사비, 운영비 등
	02급식비지원			
		01무상급식지원		무상급식지원비, 친환경우수식재료지원 등
		02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출연금지원		재단법인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출연금지원
		03토공휴일급식비지원		토·공휴일 급식비
	03정보화지원			
		01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컴퓨터,통신비지원 등
	04누리과정지원			
		01만3~5세아무상교육비		3~5세 누리과정 지원 경비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반비 등)
		02저소득층유아학비추가지원		저소득층유아학비추가지원
	05교과서지원			
		01국정교과용도서대금		국정교과용도서대금
		02의무(무상)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지원		의무(무상)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지원비
	06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01다문화가정장학활동지원		다문화교육장학자료개발보급, 다문화연수비 등
		02다문화가정자녀지원		다문화가정캠프, 단체지원, 멘토링지원 등
		03탈북청소년지원		탈북청소년지원
	07기타교육복지지원			
		01기타교육복지지원		기타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
	04보건급식			
	01보건관리			
		01학교보건관리		
		01학교보건장학활동지원		각종지침, 장학자료개발보급, 워크숍비용, 보건협의회운영, 유공자표창 등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학교보건실현대화지원	학교보건실현대화지원
			03학생건강검사지원	건강검사표본학교지원
			04학생건강프로그램운영지원	건강캠프, 구강교실, 아토피피부염완화교실, 파랑새희망교실운영 등
			05학교흡연예방사업	흡연예방교육사업, 금연학교 운영 등을 위한 관련 경비
			06학생전염병관리	학생전염병관리
		02학교환경위생관리		
			01교사내환경위생관리	미세먼지 관리, 실내공기질 측정, 방역 등 교사내환경위생관리 사업을 위한 관련 경비
			02학교먹는물시설개선지원	학교먹는물시설개선지원비
			03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비
		03산업안전보건관리		
			01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 보건체제 운영, 산업안전 보건 교육운영, 근로자 건강관리 운영 제경비 등
		02급식관리		
		01학교급식운영		
			01학교급식위생관리	급식학교검사경비, 점검단운영 등
			02학교급식운영지원	관계자 교육 및 설명회경비, 급식위원회경비, 학교급식전담직원대체 인건비 등
		03학교급식환경개선		
			01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노후급식기구 교체, 위생관리시스템 지원,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 등
		05학교재정지원관리		
		01학교운영비지원		
			01학교운영비지원	
			01학교기본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비지원
		02사학재정지원		
		01인건비재정결함지원		
			01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립학교 인건비보조금
			02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	교원 및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03사립학교교직원성과상여금	사립학교 교직원 성과상여금
			04맞춤형복지비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운영비재정결함지원		
			01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지원
06학교시설여건개선				
	01학생배치시설			
	01학교신증설			
		01유치원신설		신설에 따른 제반 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신설비품비, 개교경비 등
		02초등학교신설		신설에 따른 제반 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신설비품비, 개교경비 등
		03중학교신설		신설에 따른 제반 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신설비품비, 개교경비 등
		04고등학교신설		신설에 따른 제반 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신설비품비, 개교경비 등
		05특수학교신설		신설에 따른 제반 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신설비품비, 개교경비 등
		06유치원배치시설확충		학생배치계획(학급증설)에 따른 제반경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증설비품비 등
		07초등학교배치시설확충		학생배치계획(학급증설)에 따른 제반경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증설비품비 등
		08중학교배치시설확충		학생배치계획(학급증설)에 따른 제반경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증설비품비 등
		09고등학교배치시설확충		학생배치계획(학급증설)에 따른 제반경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증설비품비 등
		10특수학교배치시설확충		학생배치계획(학급증설)에 따른 제반경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증설비품비 등
		11학교이전신축재배치		학교이전신축재배치에 따른 제반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이전비품비 등
		12학교시설공사감리		학교시설공사감리
	02학교시설개선			
	01학교시설 확충			
		01유치원시설 확충		노후화 등에 따른 유치원시설 증·개축비
		02초등학교시설 확충		노후화 등에 따른 초등학교시설 증·개축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3중학교시설확충	노후화 등에 따른 중학교시설 증·개축비		
			04고등학교시설확충	노후화 등에 따른 고등학교시설 증·개축비		
			05특수학교시설확충	노후화 등에 따른 특수학교시설 증·개축비		
			06학교시설공사감리	학교시설공사감리		
				02학교시설환경개선		
					01유치원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비
					02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비
					03중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비
					04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비
					05특수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비
					06초등학교화장실개선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비
					07중학교화장실개선	중학교 화장실 개선비
					08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08학교시설공사감리	학교시설공사감리
					09학교시설물긴급복구	재해발생학교 추가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복구공사비
10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운용을 위한 기금					
07평생교육						
		01평생교육운영				
		01평생교육시설및운영				
			01평생교육시설관리	평생교육시설지도감독		
			02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03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지원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 등		
			04학원관리	교습비조정위원회, 학원업무자료, 학원설립 등 경비, 학원연합회연수지원비 등		
			05학원지도	학원단속지도비, 각종위원회, 소송비용 등		
			06공익법인관리	공익법인 관리 및 지도비		
			07학력인정성인문자해득교육지원	학력인정성인문자해득교육지원		
		02평생학습운영				
			01평생교육활동지원	평생교육발전자문단 운영, 연수비, 평생교육관계자회의, 평생학습회비 등		
			02청소년및사회단체지원	청소년 및 사회단체 지원비		
			03문화강좌운영	도서관 문화강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4청소년강좌운영	방학중청소년강좌운영, 청소년특강 등
			05지역평생교육운영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해교육 지원,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장수대학 운영,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다문화가정문화체험교실운영, 성인 문해한글교실운영, 소외계층지원프로그램 운영, 희망사랑나눔독서지원 등
			06광주평생학습박람회지원	광주평생학습박람회 지원비
		03방송통신중고운영		
			01방송통신중고운영	방송통신중고 운영경비
		04검정고시운영		
			01검정고시관리및운영	검정고시 관리 및 운영경비
	02독서문화			
		01도서관운영		
			01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비, 각종 여비, 휴일 대체인건비, 공익요원인건비 등
			02도서관관리지원	도서관관리비품, 자산취득비, 야간학습지도 특근매식비, 도서관보수, 전산용품 등
			03전산실및디지털자료실운영	홈페이지유지, 전산장비유지보수,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04간행물관리	간행물관리비
			05도서관주간및독서의달행사	모범이용자, 다독자표창, 이용자간담회 등
			06독서의생활화프로그램운영	도서관별 독서생활화 프로그램 운영비
			07자료확충비	자료확충비
	09교육행정일반			
		01정책기획및비상계획		
		01교육정책기획관리		
			01주요업무수립및관리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주요업무계획수립, 주요업무평가
			02교육정책개발관리	교육정책개발관리 경비
			03교육정책추진	교육정책 추진 경비
			04교육감협의회운영	교육감협의회운영
		03교육정책홍보		
			01광주교육홍보물제작지원	영상물제작,홍보간행물제작, 교육소식지발간 등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광주교육홍보활동지원	PCRM문자서비스, 홍보활동경비 등
			03광주교육만족도조사	광주교육 만족도조사 경비
			04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교육공보활동지원비
		04비상대비계획운영		
			01비상대비업무추진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02을지태극연습추진	을지태극연습추진
			03민방위업무관리	민방위관리업무비
			04재난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03감사법무관리		
		01감사관리		
			01자체감사활동지원	특별사안·종합·부분·퇴직전 감사경비
			02국정감사	국정감사 수감 경비
			03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수감 경비
			04청렴시책추진	청렴시책 추진 경비
		02법무관리		
			01내부자치법규관리	규제개혁 및 내부규제 정비, 자치법규정비 등
			02소송관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비용
			03소청및행정심판관리	소청심사위, 행정심판 비용
		04기관평가및조직관리		
		01기관및학교평가관리		
			01시도교육청평가	시도교육청평가운영비
			02교육지원청및직속기관평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평가운영비
			03학교평가준비지원	학교평가위원선정, 평가위원연수(워크숍), 평가편람인쇄비, 평가위원회협의회, 학교평가사업추진 시도분담금 등
		02조직및성과관리		
			01조직문화및업무개선지원	조직문화개선, 업무개선에 필요한 경비
			02성과관리시스템운영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등
			03조직및정원관리	조직 및 정원관리를 위한 관련 경비
		03행정개선활동지원		
			01공무원제안제도운영	공무원 제안제도운영비
			02국민제안제도운영	국민 제안제도운영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3교직원업무경감	교직원업무경감
			04적극행정운영	적극행정 업무추진 및 관련 위원회 운영 등
		07의회협력및선거관리		
		01의회협력		
			01시의회업무지원	시의회 업무협력지원
		02선거관리		
			01선거관리	교육감선거관리, 교육감 선거 필요경비
		09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01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01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비
			02교무업무시스템운영	교무업무시스템운영비
			03차세대나이스시스템구축	차세대나이스시스템구축비
			04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05맞춤형통계시스템운영	맞춤형통계시스템운영비
			06업무관리시스템운영	업무관리시스템운영비
			07업무관리시스템유지보수	업무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08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운영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운영비
			09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유지보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유지보수비
			10기타시스템운영	기타시스템운영비
			11정품S/W관리및운영	정품S/W 관리및운영비
			12주전산실운영	주전산실운영비
			13학교웹호스팅시스템운영	학교웹호스팅시스템운영비
			14홈페이지운영	홈페이지관리비
			15교육정보서비스재해복구체계운영	교육정보서비스재해복구체계구축·운영비
		02정보보안관리		
			01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운영	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운영비
			02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03교육행정기록물관리		
			01기록물관리	문서관리용품, 연수, 생활기록부D/B관리 등
			02학교정보공시제운영	학교정보공시제운영비
			03행정정보공개운영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4행정자료실운영	행정자료실운영비
			05교육통계연보발간	교육통계연보발간비
		04민원행정서비스관리		
			01민원실운영	민원실운영비
		02행정서비스현장제운영		행정서비스현장제운영
13예결산관리				
		01예산관리		
			01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관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관리
			02교육비특별회계예산관리	교특예산편성,분석,자료조사 등
			03교육재정효율화운영	교육재정효율화운영
			04성인지및성과주의예산	성인지 및 성과주의예산 관련 경비
			05학교회계제도운영	학교회계제도운영
			06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02결산관리		
			01교육비특별회계결산관리	교육비특별회계결산관리
14재무관리				
		01재무회계관리		
			01계약관리	계약관리
			02지출업무협의체운영	지출업무협의체운영
			03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보험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02공유재산및물품관리		
			01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02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03물품관리	물품관리
			04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05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	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
15학생배치계획				
		01학생배치계획관리		
			01학교배치계획추진	학교배치계획추진
			02학교설립추진	학교설립추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적정규모학교육성		
			01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추진
	16사학기관관리			
		01사학기관지도지원		
			01법인업무지원	법인지원, 사학기관평가포상금
			02사립학교재정관리	사립학교직원교육훈련 등
	17교육협력			
		01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01학부모학교참여지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영 경비
			02학부모연수및홍보	학부모연수 및 홍보 경비
			03학부모및지역주민교육지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교육활동 경비
		02교육협력관리		
			01지방자치단체교육협력지원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지원 경비
			02교육기부활성화지원	교육기부 활성화사업비 등
			03공유촉진지원	공유촉진 관련 사업
		03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01국제교류학습지원	국제교류학습지원
			02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	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사업 추진사업비
	18시설사업관리			
		01시설사업운영		
			01시설사업추진지원	시설사업추진지원, 시설부대비
			02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	민간투자사업 운영 경비
	20특별교육재정수요			
		01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01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21교직원단체관리			
		01교직원단체관리		
			01교직단체업무추진	교직단체 업무추진 관련 경비
			02공무원단체업무추진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관련 경비
			03근로자노조업무추진	근로자노조 업무추진 관련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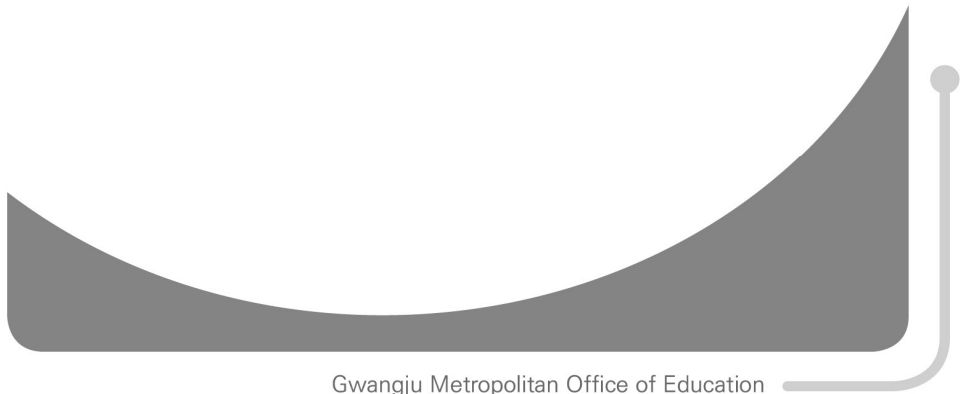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10기관운영				
01기본운영비				
01기관기본운영비				
			01본청공통기타사업비	직원수첩,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 각종 행사지원 등
			02본청기관운영비	본청기관운영비 ※ 각 기관(부서) 자산취득 경비는 '(세부)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 편성
			03본청부서운영비	본청부서운영비
			04교육지원청기관운영비	교육지원청기관운영비
			05교육지원청부서운영비	교육지원청부서운영비
			06교육지원기관운영비	교육지원기관운영비
			07도서관기본운영비	도서관운영비
02교육행정기관시설				
01기관시설유지관리				
			01본청시설관리	본청시설관리
			01지역교육지원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01교육지원기관시설관리	교육지원기관시설관리
			02교육지원기관시설신축	교육지원기관시설신축
			03직속기관시설감리	직속기관시설관리
03재무활동				
01지방채상환및리스료				
01지방채상환				
			01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
02민간투자사업상환				
			01BTL사업운영비	민간투자사업운영비
			02BTL사업시설임대료	민간투자사업임대료
03일시차입금관리				
			01일시차입금관리	일시차입금이자
04내부거래지출				
01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01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2기금전출금		
			01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
		03예탁금		
			01예탁금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예탁하는 자금
		04예수금원리금상환		
			01예수금원리금상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상호간 자금의 원리금 상환
01예비비및기타				
	01예비비및기타			
		01예비비		
			01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비비 (예산총액의 1% 이내)
			02목적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재해·재난 목적예비비(편성한도 없음)
		02제지출금등		
			01반환금및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등
			02.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환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환금
		03내부유보금		
			01내부유보금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01인건비				
	01공무원인건비			
		01교원인건비		
			01보수	봉급, 성과상여금, 각종수당 등
			02공무원법정부담금	공무원법정부담금
			03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04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05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02지방공무원인건비		
			01보수	봉급, 성과상여금, 각종수당 등
			02공무원법정부담금	공무원법정부담금
			03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04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05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레벨1)	내 용
		03교육전문직원인건비		
		01	보수	봉급, 성과상여금, 각종수당 등
		02	공무원법정부담금	공무원법정부담금
		03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04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05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02근로자인건비		
		01계약제교원인건비		
		01	계약제교원보수	기간제교사, 전임강사, 시간제강사 등 인건비 ※ 인턴교사 등 사업성 경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02	계약제교원법정부담금	계약제교원법정부담금
		03	계약제교원퇴직금	계약제교원퇴직금
		02계약제근로자인건비		
		01	계약제근로자보수	지방공무원출산휴가 등 행정대체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등 포함)
		02	계약제근로자법정부담금	계약제근로자 법정부담금
		03	계약제근로자퇴직금	계약제근로자퇴직금
		03교육공무직원인건비		
		01	교육공무직보수	교육공무직보수 (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등 포함) ※교육공무직원대체인건비 포함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업성 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
		02	교육공무직법정부담금	교육공무직법정부담금
		03	교육공무직퇴직금	교육공무직퇴직금



예산의 성과계획서



1. 추진개요

1 추진배경 및 근거

-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영 법제화
 - '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의무화(법 제5조제2항)
 -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 의회 제출(법 제44조제1항)
 - 성과보고서를 결산서 구성 서류로 작성·제출(「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 '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시범작성('15.4~6월)

2 성과계획서의 개념

-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 시도교육청의 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반영
 -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

3 예산의 성과계획 수립 기본방향

- 성과계획서 총괄 작성 및 예산 사업구조와 연계 강화
 - 예산의 정책·단위·세부사업 명칭을 모든 기관(부서)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총괄 작성
 - 성과관리 목표체계(성과목표-단위과제)와 예산 사업구조(정책·단위·세부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두 체계가 일치되도록 노력

- 성과지표 적정성 검증
 - 성과목표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개발
 - 성과지표의 품질향상을 위해 성과목표-단위과제별로 성과지표 담당 부서를 지정·운영
 - 예산부서는 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해당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적정성 등을 성과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 ※ 필요한 경우 성과계획서(안)에 대하여 내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
-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계획서 작성
 -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계획서 작성 및 관리는 K-에듀파인시스템과 연계하여 작성 추진

4 작성대상 기관 및 업무

- 대상기관: 시도교육청 본청
- 대상업무: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사업은 제외 가능
 -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지방채상환및리스크, 내부거래지출),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제지출금등, 내부유보금), 인건비, 세부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사업경비가 아닌 세출예산사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의 행정운영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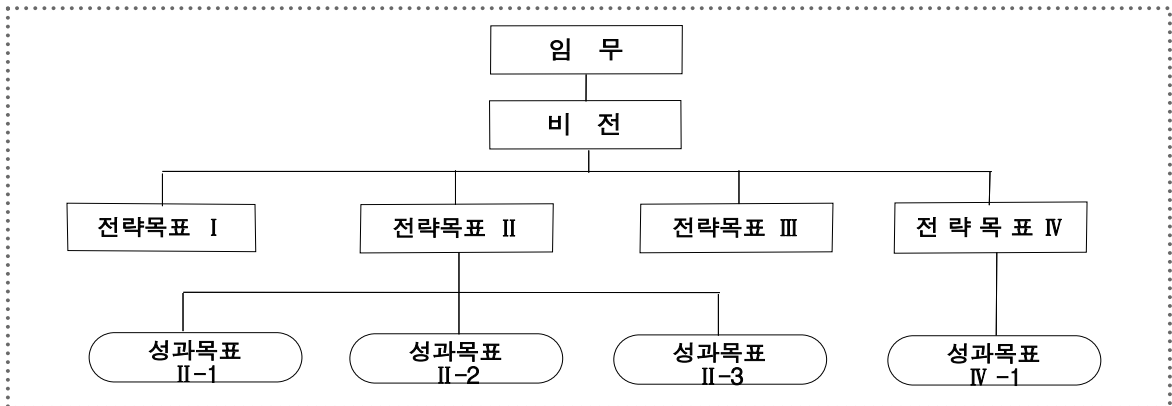
2.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1 기본방향

- 시도교육청의 임무와 전략목표에 기초한 성과목표체계 제시
- 성과계획 목표체계와 예산체계를 연계하여 성과관리 강화
-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위주로 설정

2 목표체계 수립방법

< 성과계획 목표체계도(예시) >



1. 임무 설정

- 임무는 시도교육청의 존재이유(목적)와 주요기능을 의미
- 시도교육청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규정, 관계법령에 제시된 역할 등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인 내용으로 설정
- 설정된 임무는 시도교육청의 핵심 업무를 포괄하고 구체적이며 목표 지향적이어야 함

2. 비전 설정

- 비전은 임무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
- 비전설정은 조직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해하기 쉽고 종합적이며 고무적인 표현으로 함
 - ※ 단순한 전략의 나열 또는 상상에 의한 비전 수립은 지양

3. 전략목표 설정

- 교육정책목표, 시도교육청의 임무와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 시도교육청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연계성은 명확해야 함
-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정책이 주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어 형태로 작성
 - (예)“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 전략목표를 임무 수준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재정운용 성과 예측 또는 성과목표 설정이 곤란
 - (예)“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한다.(×), “선진 ○○체계를 구축한다.(○)
-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계획 또는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포함
 -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각 실국(부서)의 소관 분야별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활용
 - 특히,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수립 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내용을 반영
- 전략목표의 수는 시도교육청 전체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전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

4. 성과목표 설정

-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또는 성과목표와 단위과제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단기간(연간)인 성과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연계성 강화
- 성과목표는 목표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가 불명확할 경우 이에 근거한 성과지표 또한 모호해지므로 성과목표 설정단계부터 구체성 확보에 노력

5. 단위과제 설정

- 단위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됨
- 단위과제는 예산체계상 세부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세부사업과 1:1, 또는 1:N이 되도록 설정

※ 예산체계상 세부사업의 일부가 단위과제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일부만 분리하여 설정할 수 없으며, 단위과제와 세부사업간 1:1 또는 1:N의 내용 전부 일치하는 향후 예산사업 구조화를 통하여 개선

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성과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
 - 성과지표는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고 지표수는 적정수로 하되, 향후 성과계획체계와 예산사업체계의 일치 노력을 통해 지표수를 3개 내외로 축소
 - 두 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결과중심적 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

<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 성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음 반복 측정 시 동일 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개입

-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
 - ※ 사업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
(예) 홍보사업: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제시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분	개 념	특 성
투입 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예: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특히,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관대하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

<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 >

① 성격이 다른 복수의 성과지표를 가중 평균하여 하나의 종합지표를 제시한 경우

지표명	측정산식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	$(\text{○○서비스 이용자 수} / \text{○○서비스 이용자 목표치}) * 50 + (5 \text{ 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평가점수} / 5) * 50$

②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명	성과지표명
① △△△ (1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수혜인원 수 ■ △△△ 시스템 안정도
② ▲▲▲ (15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이용자 ■ ▲▲▲ 프로그램 이용자 수

⇒ 단위과제 중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③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하나만 제시한 경우

⇒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제시

④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

(예시) ○○○ 개선사업

지표명	측정산식
예산집행율(%)	$(\text{당해연도 집행액} / \text{당해연도 예산현액}) \times 100$

⇒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지표는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미흡하므로 결과지표(개선 후의 실적) 의미있는 산출지표로 ○○ 개선실적 또는 중장기 계획대비 ○○ 개선실적 등으로 성과지표를 제시

⑤ 정량적 사업실적을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한 개별구간으로 재환산하여 최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경우

(예시) ○○○ 회의 개최 횟수

1~15회 60점, ~20회 70점, ~30회 80점 : 목표치 80점 ⇒ 개선: 목표치 30회

⇒ 인위적으로 구간화할 필요 없이 원래의 측정 수치를 그대로 사용

2.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아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근거를 명확히 작성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 〉

-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 ②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③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 신규지표에 대한 목표치의 경우, 유사사업 또는 과거 추세치 등을 반영하여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점을 그대로 목표치로 설정해서는 안됨
- ④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

- ① 임무·비전 및 전략목표·성과목표 확인
 - 지표 개발에 앞서 시도교육청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확인
- ② 성과지표의 수집
 - 기존지표와 타 기관 지표를 수집하여 관련지표 Pool을 형성
- ③ 후보 성과지표 개발
 - 다른 사업의 모범지표 사례가 없거나, 선진사례를 통한 지표수집이 어려운 경우,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따른 적절한 지표를 새롭게 개발
 - 새로 개발된 지표들 중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목록 작성
- ④ 1차 성과지표 선정
 -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경우 대표성이 있는 성과지표로 통합
 -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달성이 용이한 지표 사용은 지양
 - 수시 측정이 가능하고 자료 활용이 용이한 지표를 선택
- ⑤ 성과지표 조정 및 확정
 - 성과지표 간 중복 또는 상충여부를 검토·조정하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여러 부서 간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 성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결정
 - 성과지표가 확정되면 확정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드시 수립
 - 성과지표 관련 자료의 생성과 관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외부 환경변화 및 조직변화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경·수정 등 지속적 관리방안을 명확화
- ⑥ 성과지표의 상세화
 -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한 상세화
 - 계산식 표현을 통한 상세화

- 다음의 작성모델을 참고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 성과계획서 작성모델 〉

제1장 성과계획 목표체계

1. 임무와 비전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3. 조직 및 교육재정 현황

제2장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1.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
2.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제3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1. 성과계획 총괄표
2. 세부 성과계획

※ 세부 작성요령은 붙임 양식 참조

3.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 (9월말, 해당 부서)
 - 소관 예산에 대한 '22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10월, 예산 및 성과관리 부서)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10월, 예산부서 ↔ 각 부서)
 -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가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대해 작성 지침과의 부합성 등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
 - ※ 전체적인 성과계획 목표체계, 성과지표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
 - 각 부서는 예산부서의 검토의견과 예산안 협의·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를 수정·보완
- 성과계획서 검토 및 의회제출(안) 확정 (10월말~11월, 예산부서)
- 성과계획서 지방의회 제출 (11월, 예산부서)
 - '22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 의회 제출
- 성과계획서 확정 ('21. 12월 ~ '22. 1월)
 - 각 부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 예산부서와 협의 후 수정·보완하여 「'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확정
- 성과보고서 작성 ('22. 3월 ~ 5월, 시도교육청)
 - 결산서 작성과 연계하여 작성 ※ 지침 별도 통보

붙임 1. 성과계획서 작성서식 1부. 끝.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 ○ ○ 교 육 청

목 차

제1장 성과계획 목표체계

1. 임무와 비전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3. 조직 및 교육재정 현황

제2장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1.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
2.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제3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1. 성과계획 총괄표
2. 세부 성과계획

※ 붙임 1-1.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부.

1-2.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 현황 1부.

1. 임무와 비전

임무와 비전

임무(Mission)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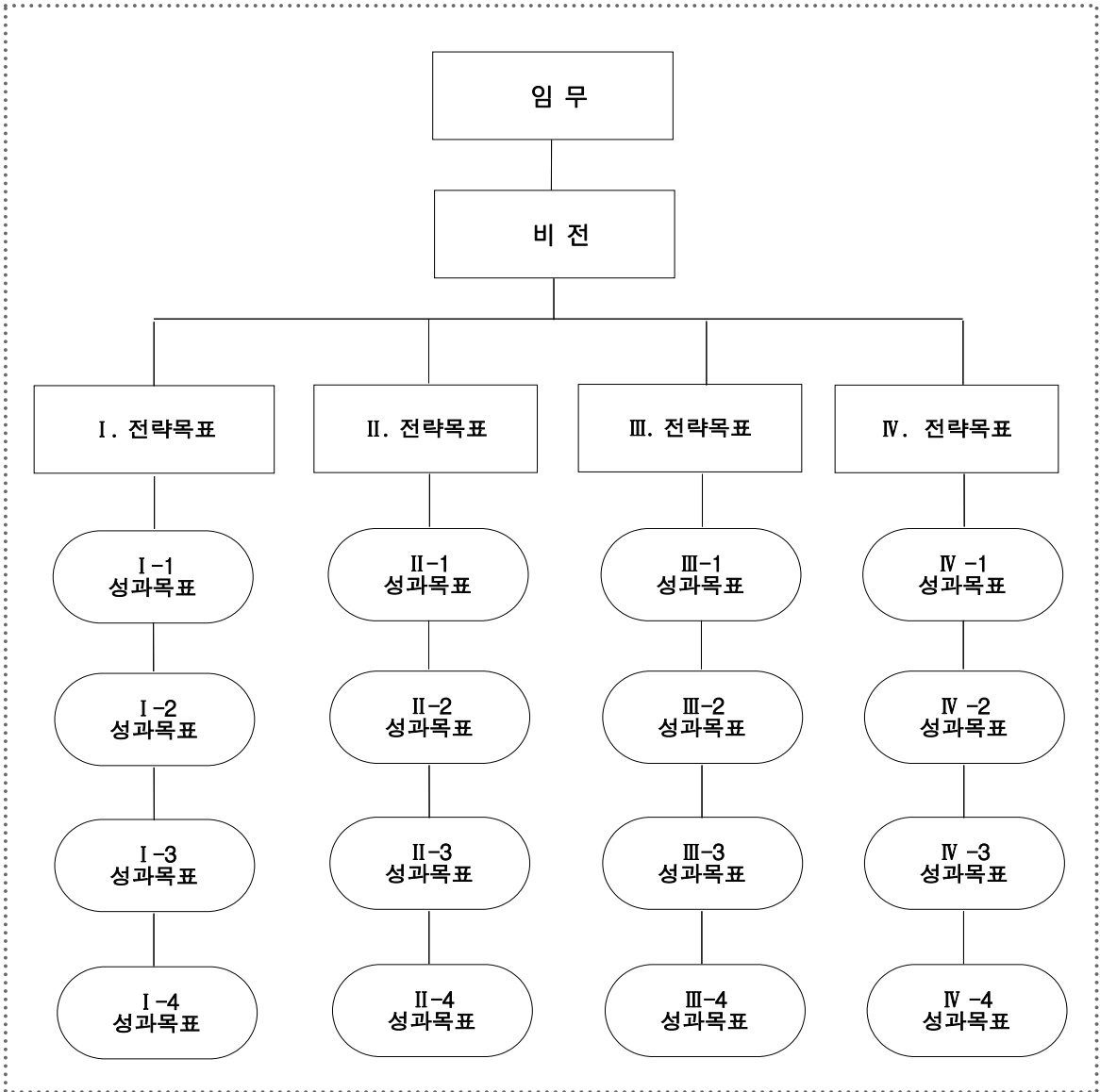
○

비전(Vision)

○

○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 해당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임무→비전→전략목표→ 성과목표 간의 체계를 도식화하여 제시 (체계도는 그림 또는 표형태로 구성)

3. 조직 및 교육재정 현황

□ 조직

○

※ 실·국·과 현황 및 조직도 표기

□ 인원

○

※ 전체 인원 및 직급별 현원 표기

□ 교육재정 현황

○ 성과관리대상/ 비대상 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2년 예산 (C)	'21년 예산 (D)	증감 (C-D)	재원 비중
총 계(A+B)		E+J	E'+J'		
성과관리 대상사업	전략목표 I				
	전략목표 II				
	...				
	소계(A)	(E)	(E')	(F=E-E')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력운영비	(G)			
	기본경비	(H)			
	...				
	예비비	(I)			
	소계(B)	(J)	(J')		

1.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가. 재정여건**

○

-

나. 재정전망

○

-

※ 해당 교육청의 2022년도 재정전망을 간략히 기재

2.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

-

○

-

○

-

※ 해당 교육청의 2022년도 전체적인 재정운용방향을 기재

제3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1. 성과계획 총괄표

가. 총괄

(단위 : 개, 천원)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단위과제수	예산액		
			'22년	'21년	증감

나. 성과계획 및 자원비중

(단위 : 천원, %)

전략목표명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비중
I.	I -1.	①		
		②		
		:		
	I -2.	①		
		②		
		③		
:	:			
II.	II -1.	①		
		②		
		:		
	II -2.	①		
		②		
		③		
:	:			
III.	III -1.	①		
		②		
		:		
	III -2.	①		
		②		
		③		
:	:			
:	:			
합계				

※ 예산액은 성과계획서 작성대상이 되는 사업의 예산액

2. 세부 성과계획

전략목표 I

기본 방향



-
-



-
-



-
-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전략목표 수준에서 당해연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단, 주의할 점은 성과목표별로 기술한 세부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내용으로 기술하여 동 내용이 본문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 당해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성과목표들과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성과목표별 정책 우선순위 등 기재

I -1. 성과목표

※ 성과목표명 기재

(1) 주요내용

□

○

-

-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① 성과지표명	0.6	목표	-	신규			측정산식만 간단하게 기재, 구체적 사항은 아래표에 자 세히 기재 ○○○ = A / B	
		실적	-	-				
② 성과지표명	0.4	목표						
		실적						

- '20년은 실적치, '21년은 추정치, '22~'24년은 목표치 작성

- 성과지표별로 가중치를 두어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음 [예,가중치합=0.6(지표1)+0.4(지표2)=1]

- 실적 및 목표치 : 빈칸의 경우에는 '-' 표기, 신규일 경우 '신규'로 표기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성과지표명

○ 측정산식 : ○○○ = A / B (A와 B에 대한 설명)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2.1.1 ~ '22.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3.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총 ○○개) 혹은 샘플 500개 조사 등

* 만족도조사 지표의 경우, 조사대상, 조사항목, 평점부여 방식 등을 추가 작성

- 평점부여 방식 : 점수환산 방법 기재(예, 리커트 5점 척도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외부환경 대비

■ 개선사항 대비

② 성과지표명(하향지표)

〈 작성요령 〉

※ 성과목표를 직접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1개 이상 설정

- 1) '21년 실적은 추정치로 제시
 - '22년 수정 성과계획서 제출시기('22년 1월)에 '21년 실적치로 변경 제시
- 2) '22~'24년 목표치는 다음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과의 비교
 - 과거 추세치(과거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를 고려한 후, '22년도 추진할 구체적인 개선사항 반영
- 3) '22~'24년 목표치 설정근거는 과거 추세치 대비 $\pm 0\%$ 조정, 유사사업-중장기계획 대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외부기관의 객관적 자료 등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 개선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제시
 - ※ 중장기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사업계획상 중장기 목표치에 대해 정량적 수치, 근거 및 달성 전략 기재
- 4)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은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산식 또는 방법을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5) 목표치(및 실적치)의 수치가 작아질수록 성과가 개선되는 하향지표의 경우는 성과지표명 옆에 '(하향지표)'임을 기재
 - 하향지표의 예 : 범죄예방사업의 '국민신고신속처리도(초)'
 - (참고) 하향지표 달성률 산식 = $[1 - \{ (\text{실적치} - \text{목표치}) / \text{목표치} \}] * 100$
- 6) 성과지표 실적치 산정시 측정되는 자료의 측정대상기간 및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예정)을 명확하게 기재
- 7)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는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실적확인 가능한 자료출처 기재

I -1-① 단위과제

※ 단위과제명

-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당해연도 단위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작성
- ※ 단위과제명은 예산체계상 세부사업명과 1:1, 또는 1:N으로 연결하고 포괄하여 작성

목적 및 주요내용

○ 목 적

-
-

○ 주요내용

-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2년 예산 (c)	'21년 예산 (c')	증감 (c-c')
I -1-① 단위과제명	$a+b$	$a'+b'$	
■ ○○세부사업명	a	a'	
■ △△세부사업명	b	b'	

- ※ '21년 예산: '22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본 예산액으로 작성하고, '22년 예산 확정 이후 수정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최종 예산액으로 수정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2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 : (전략목표명)							
	I -1. 성과목표명	① 성과지표명	성과지표별로 달성치를 측정할 실제방법(산식) 제시		정성/ 정량	(투입,과정,산출,결과) 중 선택	
		② 성과지표명					
	I -2. 성과목표명	① 성과지표명					
		② 성과지표명					
	I -3. 성과목표명	① 성과지표명					
		② 성과지표명					
전략목표 II : (전략목표명)							
	II-1. 성과목표명	① 성과지표명					
		② 성과지표명					
	II-2. 성과목표명	① 성과지표명					
		② 성과지표명					
	II-3. 성과목표명	① 성과지표명					
		② 성과지표명					

※ 하향지표의 경우 비고란에 '하향지표'라고 표기

(단위 : 천원)

성과목표관리체계		예산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과제코드	단위과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총 계							
전략목표 I : 전략목표명							
성과목표 I -1 : 성과목표명							
I-1-①	단위과제명						
I-1-②	단위과제명						
:							
성과목표 I -2 : 성과목표명							
I-2-①	단위과제명						
I-2-②	단위과제명						
:							
전략목표 II. 전략목표명							
성과목표 II-1. 성과목표명							
II-1-①	단위과제명						
II-1-②	단위과제명						
:							
성과목표 II-2 : 성과목표명							
II-2-①	단위과제명						
II-2-②	단위과제명						
:							



예산 편성 참고 자료



1. 예산 일반

1 예산의 개념

- 시도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금전적 수치로 나타내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1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
- 교육비특별회계*의 1회계연도 동안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회계

2 예산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30조(추가경정예산)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3

예산의 분류

1. 본예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50일전인 11월 1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27조)

2. 수정예산

-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예산이라 함(「지방자치법」 제127조)

3. 성립전 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함(「지방재정법」 제45조)

4.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각각 별개로 성립되나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4

예산 편성 절차

교특 예산편성 기준 시달

[「지방재정법」 제38조]

- 교육부 → 교육청
- 예산 편성기준, 보통교부금 예정액, 국고보조 사업 및 지방채 발행 통지



예산 편성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36조]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방침 수립/시달
-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 사정 및 예산안 작성
 -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 반영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예산의 의견 수렴)
 - ※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협의(법정전입금 협의)
 - ※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작성



예산 의결/확정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7조, 제133조]

- 의회 제출/의결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제출(11월 11일까지)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의결(12월 16일까지)
- 예산 확정 이송
 - 의결 후 3일 이내 이송(12월 19일까지)
- 교육부 예산 확정 보고 및 예산확정 고시

1. 공개의 원칙

- 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4조)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하여 ①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②재무제표 ③채권관리 현황 ④기금운용 현황 ⑤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⑥지역통합 재정통계 ⑦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⑧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⑨재정운용상황개요서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25조)
-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 지출 등이 있음

3.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22조)
- 따라서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이 있음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

5.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지방재정법』 제34조)
- 이에 대한 예외로 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와 기타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등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하는 경비 등이 있음

6.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27조)

7.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8.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9. 예산 용어해설

1 일반예산 용어

용 어	설 명
세 입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세 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일반회계 예산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용 어	설 명
특별회계 예산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본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수정 예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실행 예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 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
준 예산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총계 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
순계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 간 또는 회계 간 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 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채무부담행위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
기 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세계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예산과목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음.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목, 세목, 원가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이용 또는 전용 시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임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일시차입금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 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회계법」 제24조)

용 어	설 명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고이월비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계 속 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42조)
지난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지방회계법」 제27조)
지난년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지방회계법」 제37조)

2 사업예산 용어

용 어	설 명
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품목예산제도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 배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못한 등의 단점을 가진 예산제도를 말하며, 품목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품목예산이라고 함
예산 구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
기 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고유의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하여 기능이라 함
분 야	정부 정책 실현의 고유 영역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분류 결과가 항상적이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부 문	분야만으로는 국내외 재정통계 목적 등에 미흡하여 각 분야를 한 단계 더 세분한 것을 말하며,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 업	정책·단위·세부사업을 통칭하거나, 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의미
사업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
정책 사업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됨

용 어	설 명
단 위 사 업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세 부 사 업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품 목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목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세목	통계 목적을 위하여 각 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원가통계목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세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중기재정계획	차년도 예산을 포함한 다년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투자심사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심사 과정을 말함
예산편성 한도액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조 정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심 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 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
심 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
확 정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공식화하는 행위
지 급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
지 출	향후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임
사업관리카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성과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 전 사업수명주기(Life-Cycle)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형화된 관리서식
예 산 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한 것
예 산 서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